12.65

日 時 1996年10月16日(水)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501號)

議事日程 , , , , ,

1. 國會法改正方向에관한公聽會

1. ②國會法改正方向에관한公聽會

(14시17분 개의)

〇委員長 金重緯 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6차 制 度改善特別委員會를 개최하겠습니다.

1. 國會法改正方向에관한公聽會

〇委員長 金重緯 의사일정 제1항 國會法改正方 向에관한公聽會를 상정합니다.

그동안 지방 國政監査 또 여러 가지 일에 바쁘 신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나와주신데 대 해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이직도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국정감사에 참여하느라고 참석하시지 못 한 분이 있습니다마는 참석하신 위원님 중심으로 우선 시작을 하고 다음에 또 참석하시는 대로 함 께 공청회의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도개선특별위원회 는 國會法을 위시해서 선거와 관련된 공직자의 중 립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放送關係 法에 대한 개정을 위해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것 의 일환으로 오늘 제1차로 國會法 改正에 대한 公 聽會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도 저희들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네 분 교수님들께 먼저 감 사 인사말씀 드립니다. 이 네 분을 앉으신 순서대 로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구태여 소개해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만한 그런 분들로 議會政治의 한복관에서 평생을 살으셨던 분들과 평생을 議會政治만으로 연구해 오신 분들로 오늘

네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우선 朴鍾洽 成均館大學 교수를 초청을 했습니 다. 박교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회운영위 원회 수석전문위원과 立法次長 그리고 현재 성균 관대학에서 의회행정론을 강의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와 함께 이 국회안에서 평생을 보내신 분입니 다.

人名英马克格雷 医马马子医多马氏病疾病 對於聲声

化水散物 医乳液 法自身性 的复数整套整体 海绵

医马耳氏性皮肤 经货品 电管性 医管性 医精神 统

등 경우 이 사람이 되었다.

다음에는 李範俊敎授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설명이 더 필 요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들의 대 선배의원님 이시고 梨花女大의 교수로 계신 분으로서 미국 워 싱턴D.C의 아메리칸大 大學院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陳述人 李範俊 제가 이화대학에서 가르치다가 국회의원 6년 하는 바람에 쫓겨나서 현재 성신여 자대학교에 있습니다.

〇委員長 金重緯 그렇습니까?

또 청주대학의 陳在勳敎授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사위원회 입법 심의관과 국회사무처의 의사국장 국회경과위원회 수석천문위원을 역임하신 분으로 국회사정을 누구 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지요. 오늘 나와 주셔서 감 사합니다.

그 다음에 柳勝男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님을 소 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교수님은 미국 텍 사스에서 정치학을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현재 국 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감사합 滋香物质层的 克莱利 春報 套套具形 意加多语 그 다음에는 公聽會 進行順序와 方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오늘 나와 주신 네 분의 말씀을 전부 다 듣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자유 스럽게 진술인으로 나와 주신 교수들께 질의 응답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傍聽人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청 인은 직접적으로 발언하기가 아마 법적으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시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사무처의 전문위원이나 입법심의관에게 주면 그 입법심의관이 위원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기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國會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는 앉으신 순서대로 우리 朴教 授님부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〇陳述人 朴鍾洽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입법차장으로 여야위원님들 모시다가 진술인 자리에 서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반갑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무겁기도 하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그저 오랫동안 국회에 몸담았던 사람이 경험담을 얘기하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한 몇 분동안 우리 國會의 族譜를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의회제도라는 것은 영국이 모국인데 1295년도에소위 「모델 팔러멘트」(Model Parliament)라고 해서 模範議會가 생긴 것이 벌써 700년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영국에서 1600년대에 의회주권이확립됐고 그 전까지 입법권 예산심의권 이런 것이다 확정이 됐고, 의원내각제도 영국이 모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의회제도가 구라파에 번지지 못하고 그 모범의회가 생긴 500년후 즉1700년대 후반에 미국의 독립과 더불어 영국의식민지였던 미국 땅에 의회제도가 뿌리를 내리면서 미국은 미국대로 독특한「컹그레셔널 시스템」(Congressional System)이라고 그래 가지고 美國議會制度가 거기서 정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다시 거꾸로 구라파대륙으로 가서 프랑스혁명과 더불어 프랑스에 의회제도 가 또 전파가 됐고 그 후에 독일 스칸디나비아 기타 스페인 이런 구주대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제도가 영국계통 특히 영국의 식 민지였던 나라들은 계속 영국식 소위「웨스트미니 스터 스타일」의 의회제도가 됐고 남미라든지 특히 아시아의 필리핀 일본 이것은 전후에 미국식 제도 를 받아들였고 우리나라도 역시 미국식 제도를 일 본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 뿌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日本 國會法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도상으로는 미국의 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제도를 택하게 되어 있고 그러나 그동안의 헌정사에서 아시다시피 여러 번의 헌법개정을 통 해서 우리나라에만 독특한 제도들이 많이 생겼습 니다.

예를들어서 의원내각제하에서만 하는 對政府質問 이것이 또 우리나라에 있고 또 國政監査制度이것도 사실 정규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고 이런 등등의 제도들이 우리나라 나름대로 지금 생성이 되어가지고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헌정사적으로 몇 번의 의회제도의 우리 국회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국회는 소위 독회제도로부터 시작된 本會議中心制 였다가 민주당 정권 그러니까 5대국회때 常任委員 會中心主義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화당정 권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큰 물줄기의 하나였고 그 다음에 하나의 물줄기라는 것은 유신시대로 돌아 가는데 유신시대는 주로 그 당시 상황은 될 수 있 으면 국회를 안 여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發言 制度를 제한하는 제도 이것이 유신때 생긴 제도지 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의결로 발언시간이나 수를 제한하게 되어 있었고 교섭단체 협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국회법에 명문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 다음 하나는 13대국회에서 이른바 여소야대때 그때 국회법개정은 될 수 있으면 議長權限을 좀 제약하는 방향으로 하고 말하자면 공화당정권 이전으로 돌아가도록 자꾸 그런 제도를 했고 최근의 제도개혁은 역시 1994년도 여야합의로 된 제도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최근의 제도개선은 제가 최근 일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하른 이렇게 우리나라도 한 내후년이면 50주년이 됩니다마는 영국의 700년 미국의 200년에 비하면 아직 일천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폴스비라는 학자같은 사람은 議會類型을 나누는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누었지요. 하나는 소위 아리나적 의회라고 그래가지고 競技場的 議會

그러니까 토론이 활성화된 의회 그것은 대표적으 로 영국을 들었고 그 다음에 變形的 議會라고 그 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사회 모든 문제를 아주 적 지에 입법정책화하는 기능이 발달된 나라 이것은 미국의회를 들었습니다. 무료 글스크를 가득하는 때

그래서 양극을 한 축으로 했을 때 기타의 모든 나라들은 그 중간에 어디 있을 것이다 그런 분들 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실은 바로 중 과에 있을는지 討論이 강할는지 立法이 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제가 평소에 집필을 하 던 것중에 한 부분을 여기 노란 책에다 했습니다 마는 국회입법과정이 보다시피 우리 국회는 토론 이 좀 미약합니다. 1년에 14대에 본회의에서 한 9 건 정도 토론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미흡하고 입 법기능도 아시다시피 조금 미약한 그런 위치에 있 **提到中**年的基本的 指定的 连 电电影 医原体小

그래서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마 는 이번에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700년동안 역 사를 가진 것인데 우리 50년이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국회도 선진국회가 되리라 그 권 일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한테 맡겨 주신 한 열개 항목에 대해서 간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 到外,全体要求基础的企业、企业、企业企业的企业

도 이것은 제가 서술적으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 나 하면 바쁘실 것같아서 문제의 핵심만을 파악하 실 수 있도록 表 식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부터 하나 하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 전 逐條審查를 통한 立法審查機能強化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제도상으로는 두 [가지 모델이·있습니다. ** 등 보고 보는 보고 보다.

문하다는 대체로 本會議中心制下에서 하는 조위 1 독회로부터 3독회로 이어지는 입법과정인데 제1 독회에서는 대개 제안설명 안건당독 그 다음 제2 목회에서는 일반원칙 토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에 위원회로 가서 내용점차를 하고 위원회에서 점 사보고를 하면 그때 逐條審査를 하고 수정안심사 를 하고 그 다음 제3독회에서 최종안을 표결하는 첫 이것이 체1모델인데 이런 나라들은 영국을 비 롯해서 독일, 호주, 카나다, 인도 대개 영국계통의 사라들이고 제2모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식 보면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스 우스 프로스 프로

미국도 목회는 있습니다마는 讀會가 形式化되어 - 있어서 대개 타이틀만을 낭독하고 주된 심사는 위

원회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위원회 심사 가 끝나면 본회의에서 역시 축조심사 또 수정안 집사 최종안 표결을 하게 되는데 미국도 역시 영 국제도를 많이 따왔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소위 全院委員會라는 데서 축조심사를 하는 경우도 많 습니다.

이런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일본도 프랑스도 대개 그러한 모델입니다마는 우리 국회는 이상스 럽게 발전을 해 왔는데 계현때부터 4대까지는 영 국식체토도 아니고 미국식제도도 아니고 일단 위 원회로 먼저 옮겨 놓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다 음부터 1독회 2독회 3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그래도 議案朗讀도 했고 2목회에서는 逐條審 査도 했고 그랬습니다. 한국 교육은 교육 설계를

그러던 것이 5대국회에 와서 委員會中心制度로 오면서 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서 하는데 본회의에서 독회가 없어져버리고 심사보고 질의 토론 그 당시만 해도 축조심사는 있었는데 議長權 限으로 省略可能이라고 國會法을 해놓아 그때부터 축조심사가 안되기 시작하는 씨앗이 되었고 9대부 터 12대까지는 국회법에 逐條審査過程을 委員會 過程으로 해놓고 본회의에서는 그런 것을 다 없애 버렸고 또 위원회에 갔다 놓고도 委員長이 축조심 사를 省略할 수 있다고 했고 지금 현재는 委員會 議決로 축조심사 생략 가능하다고 되었습니다. 이 러다 보니까 우리 입법과정에서 축조심사는 아무 데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묘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지수 목본통통 등 문제되다고

- 그래서 運營實態 및 問題點에서 보시다시피 토 론도 별로 없고 또 축조심사도 없고 대개 小委過 和에서 축조심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 지는데 저희의 소위심사과정이라는 것이 이른바 | 爭點妥結式 協商方法을 関하고 | 있合니다: 그러니 까 어떤 법안이 오면 대개 쟁점을 추출해서 그것 만 타결하면 나머저 문안은 전문위원이 해와라 이 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축조심사 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 의견은, 지금 여야 가공히 출조심사를 강화하자는 쪽으로 읽고 왔습 나다마는 이것은 꼭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린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가 오랫동안 逐條審査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하면 마치 조문 하나 하나를 다 읽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 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6대국회때 국 회법을 보면 페이지별로 할 수도 있고 장별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조문별로 할 수도 있다.이렇게 여 러 가지 축조심사 방법을 예시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도입했을 때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예시를 하면 생활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점언해서 말씀드리자면 IPU같은 데 가면 결의 안도 축조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은 豫算審查機能 強化問題인데 논의의 초점은 여당축에서는 현행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졸속십의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자는 것으로 이해 했고 야당축에서는 豫算委員會을 常設化 하자는 것이 조점인 것 같습니다.

지 우선 외국제도를 보면 대채 예산을 심사하는 외국제도는 86년도에 IPU가 조사한 것을 보면 財政關係委員會, 우리로 말하면 예산위원회같은 것인데 여기서 천담하는 나라가 37개국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 專擔委員會와 關聯常委가 공동소관으로 하는 나라가 18개국 이태리가 대표적인 나라이고, 그 다음에 전담위를 두지 않고 各常任委員會에 다 나누어 주어서 하는 나라도 있는데 여기에는 소웨덴, 화란 등이 포함됩니다.

고 다음에 全院委員會에서 주로 예산을 다투는 나라가 영국 등 19개국이고 우리나라처럼 特委를 구성하는 나라는 제가 밤새도록 찾았는데 아일랜 드, 벨기에, 태국 등입니다.

우리나라 제도는 제헌부터 5대까지는 財經委員會에서 다루다가 1953년에 재경위원회와 예결위원회로 분리되면서 豫決委員會로 넘겼고, 6대에서현재까지는 特委制度로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 심사제도는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1994년 제도개선때 종합정책질의시 어떤 형태든지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대표절의 또는 교섭단체별 시간할당제 등을 예시해서이런 방법으로 기간을 정하도록 했고 현행 국회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會議現況은 운영실태에서 보듯이 豫決委 豫算審查期間이 아주 짧습니다. 상임위는 하루 내지 3일 예결위는 13일, 짧은 것은 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豫決委 常設化 내지는 현행법하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 제도인 것 같은데 豫備審查制度로 했다가, 상위에서 심사하고 완전히 의결하는 제도로 했다가 또 예비심사제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오다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권과 예결위원회의 예비심사권이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하느냐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制度改善委員會에서도 94년도에 하다가 여야위원님들의 생각들은 비슷한 것 같은데 막상 이런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니까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는 그런 것을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代가 바뀔 때하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선 현행제도의 綜合政策質疑 이것을 對政府質問運營方式을 그대로 준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豫算委의 常設化問題는 장기적 목표로는 그쪽으로 가되 상임위원회와의 균형 이것에 대한 예비적인 해결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마는 정기국회때 예산만을 위해서 한 10여일 예결위원회를 가동하는데 이것을 1년에 두 번 정도 대개 정부측에서 예산편성기준이 정해지거나 또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가 집계될 때 한 번 하고 정기국회때 한 번 하고 그런 정도로 1차적으로 진전을 시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제 개안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고 다음에 決算審査機能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마는 8페이지입니다.

결산심사기능은 지금 초점은 결산위원회를 分離 主新設하자 이것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아마·자금 안을 보니까 대강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다만 야당은 상설하자는 얘 기인 것 같고 여당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모 르겠습니다마는 常設與否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는 것 같고요, 與黨案은 만약에 분리하는 경우 에는 감사원을 소관기관으로 하자 그런 아이디어 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는 언급이 없고 결산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정해 여 있더군요. 우리가 전 부처를 상대로 하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決算委 具會에 대해서는 외국제도를 지금 중 요약을 해놓 있습니다마는 절차별 유형으로는 대개 결산보고를 하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오지리 덴마크 [이집트 그리스 필리핀 스페인 이런 나라도 : 꽤 ! 있 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결산보고가 있으면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로 올라가는 이런 제도가 있 고요, 이것은 호주 브라질 프랑스 인도 일본 화란 ·영국 이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입니다.> magaz

所管委別로 그러니까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나

라를 또 소관위별로 보니까 결산위원회를 따로 뗀 나라 이런 것이 인도 일본 노르웨이 영국 이런 나라들이 있더군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예산 심사하는 위원회와 통합형이 많더군요. 이것이 호주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화란 이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一長一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리형 또는 예산 다루는 것과 지금 우리 豫決委나 똑같은 것이지요 통합하는 형…… 미국은 결산 위원회라고 따로 없고 전 상임위원회가 필요시 하는 것이다 이것도 아마 미국의 GAO가 의회쪽에 가까우니까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會計檢查 專門機構 이것은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분리형, 통합형 결산보고를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 會計檢查가 어디에 불어 있느냐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없는 나라도 있기는 있더군요. 알젠틴 카메룬 쿠바, 의회소속인 나라는 오지리 덴마크, 덴마크 같은 데에서는 위원회를 두지 않고 소위 會計委員을 본회의에서 다섯 사람인가 선출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 다섯 사람으로 하여금 결산을 하도록 덴마크에는 이런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政府所屬 또는 독립국가라고 했는데 정부소속 밑에 있는 것은 독립기관인데 이것이 미 스타이핑이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정부 소속이나 또 독립기관형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시 면 되겠고요.

국우리 國會制度는 아까 예산심사제도하고 절차는 똑같이 발전되었습니다. 예결위하고 묶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실태는 아시다시피 이것도 결산은 예산보다 그런 것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좋겠고 다만 우리도 制度改革을 한 두번 중요한 것은 하기는 했습니다.

1990년도에 豫算會計法을 고쳐가지고 결산보고 서를 그 전에는 10월2일 예산하고 같이 제출하던 것을 그 때 한 달 앞당겼지요. 그 다음에 94년도 에 豫決特委를 9월2일 그러니까 결산 들어오는 때에 자동 구성도록 하자 이것도 의미있는 제도개 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문제점은 역시 常委 豫備審査問題 또 결산심사를 떼어놓았을 때 예결위에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지금 常委 豫備審査도 예결위 반영이 전혀 안되거든요. 그런데 또 결산내용이 예산위원회에도 가야되는데 이것에 대한 장치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전담형은 저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막상 조사해보니까 그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常設化問題는 역시 예산위원회 상설화문제와 다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요

결산위원회가 있는 나라는 야당에 위원장을 할 애하는 나라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결산심사에 대한 우선은 議事日程上의 배려 그것부터 먼저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지금까지한번 배려도 안해봤거든요. 정기국회 의사일정이다 그러면 거의 기계적으로 상임위원회 3일 주자, 예결위원회는 4일 주자 이렇게 오래동안 해와가지고 저희 국회에서는 한번 늘리는 노력도 안해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첫도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이고요,

一國政監・調査制度 이것도 굉장히 좀 센시티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국정조사제 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特別 國政監査制度을 부활 •대체하든지 또는 국정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보자 이것이 아마 여축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야측에서는 혈행 제도중에서 국정조사 발 동요건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 특히 본회의의 계획 서 승인하는 것 이것을 좀 없애야 되겠다 그 다음 에 3분의 1 발동 요구하는 것을 4분의 1로 하자 그런 등등인 것으로 제가 어제밤에 읽어보았습니 다마는 외국제도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 다마는 국정조사는 헌법에 있는 없는 다 어느 나 라나 固有權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제토입니다. 다만 이론적인 근거나 기능은 둘다 같은 것으로 학계에서도 그렇 게 이해를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다른 것은 아니다 ••••• 计原本法 医胸膜外分泌 形成复数工资 無故

國政調査는 내각제 국가, 영국 같은 데에서는 점차 쇠퇴일로를 걷고 있고 의것이 대통령제하의 미국에서 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인데 미국학자 들이 미국 의회를 지금 연구한 바에 의하면 입법 * 활동이나 예산활동보다는 상대적으로는 관심이 적 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미국의 특수한 기능일 것입니다. 미국에는 말하자면 의원 들이 지역구활동에 지역구와의 이해관계 이것이 많이 의회활동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國政監, 調査가 굉장히 의원님들 한테는 관심이 많은 분야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좀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소위 少數者國政調査制度 라는 것은 독일에서 저희가 따온 제도입니다. 독 일에서 소수자 국정조사가 아마 다른 나라는 예들 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독일이 대표적이고 바이마르헌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은 4 분의 1, 저희는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때 전문위원으로 서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목일 같은 데에서는 독일 적인 특수성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도입을 했는데 요 근래에는 국정조사제도가 많이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문헌을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아 마 국정조사라는 것이 정부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것인데 내각제하에서는 政權交替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할 필요성이 없는가봐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개 우리나라 제도는 한번 읽어봐주시 고요. 국정조사 실적은 별로 없고 이것은 그야말 로 여야 합의 특히 정부여당의 의지 이런 것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리고 국정감사를 없엘 것이냐 일부 말씀들이 계시는 모양인데 제가 보건대는 이미 없애기는 늦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부활시켜서 8년이 지났는데 그런 것 같고 그리고 特別監査制度를 만들어가지고 국정조사하고 한번 통합하면 어떠냐 이 아이디어는 저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특별국정감사 없國政監査制度때도 특별국정조사나 그냥 보통국정조사나 같은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문헌들보니까 학계에서 많은 말씀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통합하는 방법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 경우도 우리 야당에서 주장하시는 發動要件 緩和問題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그 다음 資料提出 一證人 이것은 送達時限 문제하고 국가기밀서류 열람제인데요. 외국제도는 송달시한이 미국은 7일, 일본은 5일인데 일본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본인 동의시는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7일로 되어 있어서 이 7일이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 정도 그리고 본인이 정부부처에서 동의를 하든지 또는 증인이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좀 단축할 수도 있고 적용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비밀문서관리가 제일 잘된 나라는 제가 문헌조사를 해보니까 독일, 독일의 議事規則에 부록 3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의사규칙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편적으로 논의하실 것이 아니라 14대때 아시다시피 비밀문서관리에 관한 국회 규칙을 추진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문제가 다시 거론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常任委 兼任問題 이것인데요, 兼任委 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여당 생각이신 것 같고요.

아예 이번 기회에 1인이 2개 위원회까지 할 수 있도록 兼任制度로 아주 원칙적으로 천환하자 하 는 것이 아마 野側案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의사규칙에 명문규정을 두는 나라가 제가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간단 히 말씀드리면 단임형이 있고 겸임형이 있는데, 단임형도 많고 겸임형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제도는 제도를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대개 한 몇 개 위원회를 겸임하는 것으로 옛날에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한 것이 주로 법사위 예결위, 교체위, 운영위, 요새는 정보위가 추가되었구요.

우리 국회는 한꺼번에 또 위원회를 열어요. 會期制度하고 國監制度하고 또 議事日程制度, 운영 위원회 총무단에서 다 스스로 정하시면 다 똑같은 날 똑같이 하게 되어서 모든 문제 그러니까 회의 장 문제 이런 것하고 해서 제가 보건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조금 전문화를 더 시켜서 지금 세분화하는 제도로 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만약에 의 兼任制度를 확대하려고 그러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미국에는 소위 익스클루시브 커미티(exclusive committee), 베이저 커미티 (major committee), 넌-메이저(non-major) 해가 지고 上院의 ABC 해가지고 요새 말하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거기도 인기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세 카테고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카테고리를 나눈 다음에 넌-메이저 (non-major)를 처음에는 개발하신다든지 그런 방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다음에 對政府質問 方式 이것은 쭉 외국제도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 도는 외국제도에 비하면 아주 이것도 독특한 제도 입니다. 외국제도는 대개 서면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하는 제도인데 저희는 저 음부터 구두질문하는 제도가 되어서 영국이나 프 랑츠 독일 제도하고 비교하시려면 조금 혼란이 오 는 제도인데요. 다반 이 초점은 여측은 현안중심 으로 하자는 것 같고, 양측은 시간을 좀 늘리자 그런 아이디어전 것을 같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15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하시는 의원님 은 많게, 시간은 짧게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2년밖에 안되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시행해보시고 검토해 보지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 각임니다. 한 中国基立设施 이불 그는 비한 대학부

응크 다음에 公聽會 등 開催要件 이것은 조금 오 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현행도 위원장도 공 청희 열 수 있고 4분의 1 요구가 있으면 할 수 있 는 것인데 그러니까 與一野黨 案을 전부 다 보니 까 마치 4분의 1을 5분의 1로 해야 된다는 식으 로 되어 있던데요 이것은 현행도 위원장도 열 수 있고 청문희만이 의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리니까 그것은 조금 차각이 있었던 것들아닌가 그 권[생각이 급하다] 등 등 등 하나 하는 것 같은 것 같

그 다음에 本會議 運營問題 이것은 우리 본회의 운영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 는 사람층에 한 사람입니다. 內分數 하는 사람은

를외국제도는 만독형과 협의형이 있습니다. Black

을 단독형이라는 것은 의장과 그것을 보좌하는 사 람이 사무총창이 보좌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것 은 영국는 미국, 일본 협의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이 많을 때 복수정당이 많고 그런 나라 소위 독 일 프랑스 덴마크 이런 데에는 이것이 본회의 의 사진행이 의장 혼자 하기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 다하는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원자 등

문화대서 본회의에서 선출해가지고 與野幹事를 뽑 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장 옆에 간사들이 아주 앉 아가지고 그때그때 문제가 있으면 의장이 그 간사 들하고 장의해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꾸총장이 보좌를 해주고…… 문 문으로 함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바라나 事務總長은 굉장히 천문성을 요하는 사람들로 보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공리 국회도 참 어려운 직면을 많이 당하고 있 지않습니까? 성진 ※ 함께 고드를 소핑트 다

조크래서 또 의장단독기구도 있지만, 의장협의회 체라고 그래서 스피커 컨퍼런스, 프레지디움, 뷰로 그래가지고 협의체들이 많이 또 발전되어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렇게 또 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한 설상하는 현교보는 보기를 모르다

그래서 사실 議長께 부담이 많으면서도 議長께 서는 사실 또 실제로 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라파식 그것이 어떤 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한문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국회의 무슨 規則이나 國會法 解釋問 題가 나오면 누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꼭 말씀드리려고 그렇니다. 이것은 獨逸 議事規則에 명백히 1차적으로는 의장, 2차적 으로는 운영위원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까 이런 명문규정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옛 날에는 법사위원회로 가야 된다고 그랬다 운영위 원회로 가야 된다고 그랬다, 이것이 어려운 상황 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아 주 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되면 본회의 진행 이 역시 현장제도로 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는 100

교그리고 懲戒問題도 저희는 중징계만을 쫙 했는 데 사실 하나나 실효성이 있습니까? 한번 중징계 한 적도 없고, 그러니 차라리 선진의회에서 하는 네이밍(naming)제도라도 도입을 해서 한무번 그 래도 네이밍(naming)이라도 하는 것만도 지금 못 하지요..... 懲戒委員會에 가는 경우도 없고, 가도 결론도 아나고, 사실 징계라는 것는 의원들끼리의 장계라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File # File 을마지막으로 음부즈만제도입니다. 등은 골목 공수

그이것은 보시다시피 음부즈만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통제기능에 보조장치로써 저희가 지금 얘 기하는 請願審査制度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것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간혹 혼동을 하는 경우 가 있어서 아마우 아무리 모든 논문은 사람들의 후

돌그래서? 음부즈만제도는 "다섯를개극유형이 『있습니 다마는 스칸디나비아형이 소위 이른바 순수형이라 고 하고, 변형형 이것이 영국형이라고 그러고, 행 정부형이 일본같은 데 미국의 일부 주가 있다고 그러더군요.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하와이, 절충형 이라는 것이 아마 정부형하고 의회형의 절충형인 데 이것은 프랑스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감사원형 의 이스라엘형 이런 것인데 저희는 지금 請願, 陳 情 이런 것이 처리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 을 국회쪽에 가지고 온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되겠 습니다마는 반약에 도입을 논의하신다면 일차적으 로는 우리 정치문화속에서 단계적으로 영국형의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순수위회 형, 의회형 해서 하면 이것이 기능을 할는지 지금 검증이 안되어서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苦衷處理委員會가 정부측에 있습니다. 이것 이 말하자면 정부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金重緯委員長, 朴憲基幹事의 사회교대)

그런데 苦衷處理委員會에서는 의회쪽에 아무 보고의 의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쪽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苦衷處理委員會하고 국회측하고 무슨 연계를 제도적으로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일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의송합니다. 너무 장시간 했습니다.

발**이상 마치겠습니다**를 들게 크로를 받고 함 보유를

○委員長代理 朴憲基 朴教授 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範俊教授님께서 진술해주시기 바랍니다. 〇陳述人 李範俊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는 간단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의 예를 많이 드셨는데 또 우리 모두 들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민주화가 완성된 국가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 발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다시 말해서 政黨間의 政權交替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가 야가 되기도 했고 야도 되는 그런 경험을 공유한 정당간의 정치게임이기 때문에 의회내에 절차나 제도가 다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도 그러한 정치적인 여건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다른 나라에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깊이 살 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이런 제도적인 개선책 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제가 여가 서론에 쓴 것은 다시 반복하지 않으 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情報化에 2조원이 들 고 경부고속전철에 소요되는 예산이 20조가 들 예 정이라고 그러는데 民主化의 完成을 위한 立法府 의 制度的인 改善을 하는데는 與도 野도 없고 돈 이 안 들지 않느냐 이것은 오직 정치인들의 마음 가짐이 어디 있느냐 정당, 정략적인 그런 동기라 든지 이런 것을 빼놓고 여기에서 논의가 되지 않 으면 이 시간에 아무리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도 소용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제가 6년간 국회의원을 하면서

몇 가지 절실히 느낀 점이 있어서 여기 나왔는데 또 불러주셔서 나왔지만 그때보다는 우리 국회가 상당히 변했습니다. 좋은 점으로 변한 것이 많이 있다는 점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정말 民主化 效率性, 이런 면에서 미완성이 아닌가 해서 저의 논리를 전개하려고하는데 議會의 原論的인 고유기능을 제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立法機能 豫算・決算審議機能 政府監督 및 牽制機能, 우리가 이것이 원론적인 것이고 다 아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조목조목 따져볼때 여기에는 많이 3權分立原則에 어긋나는 그런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는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는 그런 국회 고유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당에서 내놓은 案은 읽어보지 못 했습니다. 두 야당에서 내놓은 案을 대충보고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의 立法機能 活性化方案에 있어서는 여야없이 議案審議 機能強化라는 동기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공히 느끼고 계지는 것 같아서 합의가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고 싶은 것이 현행 제도하에서는 심도있는 法案審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박교수님도 지점을 하셨지만 會期末에 모든 법안이 일시에 무더기로 제출되어서 국회의 본연의 임무인 立法審議가 졸속심의로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法案처럼 빈번히 개정되는 法案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우리 국민이지요. 그래서 會期末에 본회의에서 100여개 때로는 200가지의 법안을 國會議長 팔이 아플 정도로 두드리면서 一寫千里로 통과되는 양상은 제가 있었던 9대국회나 지금 15대국회나 별로 변함이 없이 이번 회기도 또 그러한 양상이 재연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시청하기 위해서 몇 가지 改善策을 野黨이 내놓았는데 저는 거의 그 野黨案 에 同意을 합니다. 이런 것 등등 여당도 의견이 다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중에서 첫번째가 常任委員會의 活性化問題입니다. 이것도 이미 지 적을 하셨는데 복수상임위원회제도는 여기에서 일 일이 長點 短點 다 지적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지만 우선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을 확 대해 준다는 점 또 심도있는 案件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반드시 현재 한 사람이 한 위원회에서 만 안건을 심의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한 국회의 원이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에 겸임할 수 있는 이 유가 국회의원의 數가 400명이 훨씬 넘고 또 세 계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보다 다양한 분야를 커버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명 모 자라는 300명이기 때문에 1人2委員會制度를 처음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상임위원회 에서의 大體討論과 逐條審議 義務化 이것은 이미 지적을 하셔서 부연설명을 안 하겠고 또 상임위원 회 월 2회 회의를 갖도록 이미 國會法에 있기는 하지만 항상 신문에 보면 개최에 대해서 서로 與 野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시간낭비하는 것 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중에 한 분은 開會日字를 事前에 지정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개회하는 제도를 신설하면 자동적으로 그날 나와 서 안건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면, 외국에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글 이를 모스 기를 기

- 그리고 公聽會 聽聞會 義務化라고 여기에 썼는 데 공청회 모임이 國會法에도 있다면서요. 또 4분 의 1 可決도 되어있고요. 그렇게 공청회가 되면 청문회가 안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立法過 程에서 공청회나 청문회를 부정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단계에서 많은 利益集團의 의견을 통해서 輿論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이 투명해진 다 하는 뜻에서 이것은 굳이 연기시키고 지연시키 고 검증이 안되고, 저는 그 말이 일단 여기에 해 당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의 제도가 효율적이 아니고 민주적이 아니라는 것은 검증이 되었으니까 이런 새로운 제도를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정 여당의 반대가 있다면 聽聞會 開催與件 을 완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木憲基幹事, 金重緯委員長과 사회교대)

사그리고 野黨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常任委員會 配定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專門性 缺如라는 좋지 못한 폐단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원에는 씨뉴어리티 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초선의원들이 씨뉴어러티 물을 반대하고 거기에 대한 廢止論이 美國議會에서도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은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뉴 어러티 물이라는 것이 결코 단점만 가지고 있는 첫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는 누구누구하면 그 사람은 국방분야의 전문가이 고 누구누구하면 외교분야의 전문가이다 이런 것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워들은 잡화상점 주인도 아니고 이것 저것 다 되 는 바람에 회기끝난 다음에 그 사람의 전공이 무 엇이었는가 알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인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자 신있는 분야에 배정을 해서 회기동안 내내 그 분 야에 종사한다면 國益次元에서 상당히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本會議 讀會制度의 도입인데 미국에서 는 위원회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大體計 論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기도 大體討論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원회 위원장 보고단계에서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있을 때에는 다시 위원회로 再回附합니다. 그리교 逐條審議는 방도시 있습니 **中**斯 医医 医沙 内容的护护 新品 的复数表示的 整

그마지막으로 IPU얘기가 나왔지만 IPU에 저도 다녀본 사람으로서 거기 理事會가 한 국가마다 두 명씩 참석하는데 한 이백육칠십명이 모인데서도 逐條審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 로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본회의에서 이런 讀 會制 導入을 해야 법안에 대한 私도있는 심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전공 에 대해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발언할 수 있 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문학가 보를 후

그 다음에 충분한 法案審査 時期를 확보하는 문 제가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나하면 한국은 兩院制가 아니기 때문에 兩院制度를 카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한 院에서 법안심사가 되면 그러니까 하원에서 하면 상원에서 상원에서 하면 하원에서 심의한 법안을 거르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單院制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법안을 심 사하는데에는 충분한 시기를 요한다고 생각합니 **群态 ,这是华罗尔中亚英国科 中发毛病 医血管管**

그래서 외국과 같이 우리도 立法豫告制라든지 讀會制를 통한 대체토론 축조심의 공청회 심의유 예기간 확대 정부안의 연중 수시제출제도 같은 것 을 하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軍事政權下에서는 조금이라도 행 정부을 두둔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러한 것들을 회 피했지만 지금 민주정부라고 자처하는 文民政府時 代가 도래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채택하지 못할 어 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 그 모든 분유를 느

고 다음에 입법부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기능

으로서 財政機能面에서,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 이지만 영국 역사를 보더라도 국왕이 어떻게 해서 實權을 박탈 당했고 上院이 어떻게 해서 정치적인 실권을 박탈 당했는가 하는 주요 초점이 무엇이겠 습니까? 財政權을 박탈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법부의 재정권한이라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중요 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결 산심의 이것은 법안심의에 못지 않게 졸속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교수들이 이런 말 을 합니다. 한국 국회에서의 법안심의과정이나 豫 次算審議過程은 엉터리다. 그렇게 엉터리라고 알 고 있으니까 국회에 대한 신뢰감이라든지 존경심 의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실력있는 분들로서 구성된 15代國會에서는 그러 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시정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非常設 한시적, 그 러니까 매회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정당 별로 백을 써서 예결위원회에 들어가고 또 "당신 은 이러이러한 데에서 소외되었으니까 豫決委員會 에 들어가라"전문적인 배경도 없는 사람으로 정 치적인 배려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는 이것이 그 야말로 몹쓸 관례인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 막 대한 國家豫算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예결위원회에서 나온 말이 信憑性이 없으니까 행정부 사람들이 입 법부를 무시하고 행정부의 목주가 가능한 것입니 다. 다 누울 자리 보고 다리 편다고 하듯이 행정 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무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 런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실력이 없어서나, 아니지요. 당 고위충들이 專門性 가진 사람을 이런 예결위원회에 배정 안했기 때문에 오 는 폐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상설 한시적인 운영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 섬사도 정기국회중에 법안심사와 겹치고 또 상임 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나 마 豫決特委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 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대정부질의를 하고 決算하는 데 정책질의를 하고 또 예결특위에서도 국회의원 들이 숫자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니까 정책질의 로 2주일간을 채워 버리고 본회의에서 똑같은 정 책질의를 하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部別審査 같은 그런 실질적인 심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오늘 우리의 예결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거의 모두가 常設化된 예산결산위원 회입니다. 그것이 분리가 되어있는 통합이 되어있 든 이것은 상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예산위원회 제출위원회 세입위원회가 따로 있고 물론 세출 · 세입 · 예산위원회 위원들이 다른 위원회에의 소속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소관상임위원회 자리는 어디에 있는나, 소관상임위원회가 수시로 상설화된 豫算決算委員會에다가 자기들의 의견과 건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분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살림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 예산결산위원회가 常設化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예산문제를 전원위원회에서 다룹니다. 全院委員會, 커미티 오브 디 홀 (committee of the whole)하고 어 프리너리 세션 (a plenary session)하고 다 씁니다. 본회의와 전원위원회의 차이는 절차상의 차이입니다. 本會議에서는 발언에 제약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같은 의제를 가지고 두 번 발언을 못한다는지 이런 제한이 있지만 全院委員會에서는 자유토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중요한 법안의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동의로 전원위원회로 바뀌어 가지고 부의장이 의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설화되려면 동시에 1人2委員會制度 같은 것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번째 시간을 넘기고 싶지 않아서, 입법부의 고유기능인 行政府 牽制 및 監 督機能인데 이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물론 몇 자 적었지만 議會民主主義政治制度의 핵심이, 권력집중으로 인한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소위 몽테스키외의 三權分立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3권간에 권력균형이라기 보 다는 권력불균형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마 여당위 원들도 속으로는 否認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民主主義國家가 국가의 편모를 구비하려면 역시 의회의 對 행정부 견제기능수행 에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야당의 의견하고 저는 거의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여기에서 지적을 한 다면 人事聽聞會制度의 도입입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제도 가 그 안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인사청문회는 있을 수 없다 이 렇게 주장을 하는데 미국의 헌법 2조2항을 보면 거기에도 고위공직자들은 上院의 자문과 동의, 애 드바이스 앤드 컨센트(advice and consent)를 얻 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되어있지 거기에 무 슨 인사청문회 운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애드바이스 앤드 컨센트(advice and consent)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반드시 인사청 무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원에서 실 시해왔고 그것이 이제 慣例化되어 온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지금 헌법에 열거된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못할 이유 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야할 當爲性 가운데에 는 대통령이 매사에 다 만능한 사람은 아니니까 본인도 미처 모르고 자질이 없는 사람을 瑕疵있는 사람을 후보로 뽑았다는지 또는 대통령이 부당한 인사정책으로 특정인을 선출했다든지 했을 때 입 법부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憲法改正 없이도 자 질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20 문학을 보는 수 본 기본의 본

- 그리고 두번째 검찰청 경찰청 안기부 국세청의 長과 군의 간부 등 高位公職者 임명동의권 확보와 동시에 人事聽聞會開催問題인데 이것도 대통령만 이 이러한 고위적의 중요한 국가기관장들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3권간의 권한의 불균 형을 초래하는 그릇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 많은 제도를 미국에서 본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안되고 있었는지, 물론 과거에 文民政府 이전의 정권을 다 獨裁政權이라고 규정짓는다면 이해가 가지만 문민정부에 들어선 이 역사적인 단 계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병쾌하게 제도적으로 개 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이론에서 권력은 통제되 어야 하고 그리기 위해서는 분산되어야 한다는 그 헌 이론이 있습니다. [더 파워 쉐어드 더쓰 컨츄 릴드](The power shared, thus controlled)라는 이 것은 아주 민주주의 이론에서 기초적인 상식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교를 스타고 프로

지금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저도 읽어 보았는 引 國家公務員法 警察廳法 檢察廳法 公職選舉不正 防止法 등으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는 규정 이 있고 그리고 국민의 민주의식이 아주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言論機能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검 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미 강화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런 반대 이유는 명 분이 좀 약하지요. 與黨도 언젠가는 野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檢・警 國稅廳 安企 部 등 정치적으로 악용의 소지가 있는 국가 기관 장들의 任命同意權 人事聽聞會는 반드시 국회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적했지만 여당의 경우에 우리도 언젠가 야당이 될 수 있다 또 굳이 이런 高位公職 機關을 악용할 의도가 없다 이렇다면 이것은 여당 이 만들어낸 제도적인 案도 아니고 민주주의국가 에서는 다 실시되고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저는 왜 이렇게 이것을 낙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모든 국민이 文民政府 이월 民主政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 문입니다. 한 바로 : 19 등 - 불론주의 등인 그 화한

그리고 세번째 監査院의 地位問題인데 대통령 산하의 감사원의 존재라는 것은 政治的 道具化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 합니다. 大統領이 神이라고 해도 이것은 좀 무의 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의 경우 미국 영국같은 나라는 議會 所屬이고 독일 프랑스 일본은 獨立機 構인데 우리가 의회 소족이 안 된다면 독립기구로 서 감사원을 한번 다시 재편해 볼 필요가 있지 않 나 물론 이것은 憲法改正事項이기 때문에 당장 할 수는 없는 대목이겠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對政府質問과 관련된 發 言制度인데 야당은 대정부질문시간을 30분으로 좀더 연장하자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읽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박교수님과 마찬가지로 質問 時間을 연장하기 보다는 質問議員數를 늘리는 방 항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야지 저도 국회의원 시절 6년동안 특히 본회의에서 한 분이 30분씩 나가서 발언할 때 너무 지루하고 국회의원들이 잠들지 않 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重複發言에다가 演說 式으로 자기 地域區에 기록을 내보내기 위해서 다 른 사람이 했건 말건 질문하고는 거리가 먼 연설 같은 그런 내용으로 30분씩 발언을 하니까 離席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시간 연장보다는 질문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이 어 떨까 그리고 補充質問 기회를 확대해 준다든지 또 의제에 따라서는 一問一答式 討論을 확대해 준다 든지 또 特定曜日을 지정해서 대정부질문을 연중 활용하는 제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경우는 물론 內閣責任制이기는 하지만 일주일에 네 번씩 하고 총리 답변은 화요일 목요 일 이렇게 날짜가 못박혀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여야간에 모이자 안 모인다. 이런 질랑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읽었는데 그 유능한 鐵의 女人이라고 불리는 대처首相도 또 다 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單獨內閣의 대처首相도 총리 답변 전날에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소화불량 에 걸린다고 할 정도로 진지하게 나가서 답변하는 그런 자세를 글귀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수지 立法府 固有機能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고 한가지 여기에 부연해서 國會運營上의 문제를 몇가지 지적하고 끝마치겠습니다.

國會 年中 常時運營을 야당에서 제안하셨는데 저도 이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臨時國會 定期國會 이렇게 구분없이 미국과 영국같이 상시운영을 한다면 國政監査 20일간에 또 豫決委員會에서 예산심의를 두 주일동안에 무슨 쫓기는 사람같이 拙速 立法活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議長 黨籍保有禁止 이것은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야말로 정치게임의 물을 잘 지키는 그런 여야관계라면 굳이 大統領中心制下에서 의장이 당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당적을 포기합니다. 영국 의장은 의장 임기차 끝나면 국회의원 출마는 안 되고 그 대신에 귀족 호칭도 수여되고 그 후 말년에는 국가의 훌륭한 지도자로서 명예를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우리의 경우는 너무 黨利黨略에 또 입법부의 권한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國會 議長의 소속 정당의 總裁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회운영에 跛行이 오고 페어게임이 될 주가 없는 것이지요.

고래서 우리가 수평적인 정당간의 政權交替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의장의 당 적보유를 한번 금지해 불만하다 아까 박교수께서 國會法 解釋權을 국회의장에게 주는 독일의 조항 을 읽어 주셨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장 이 그런 중요한 국회법 해석권을 행사할 수 있으 려면 당적을 포기하면 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野黨案 가운데 국회출마를 희망하는 국 회의장은 90일전에 黨籍保有를 허용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

각합니다. 일본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 데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아무나 무슨 黨에 공로가 있다고 해서 임명할 것이 아니라 元老級에서 多選 議員級에서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런 아주 혜 비급에서 국회의장을 내세운다면 당적을 포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立法府의 權威를 살리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것이 가능하 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속정당의 심부름꾼 이라는 그런 누명은 쓰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懸案質問制度는 야당이 제안했는데 이것 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일을 지정 해서 현안문제에 대한 自由發言制度을 도입한다면 굳이 정당별로 장황한 대정부질문은 없어도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국의 경우를 제 가 보았는데 의회 일과를 마치고도 散會同意을 해 서 散會後 30분간 자유의제에 대한 자유토론 시간 연호있습니다. 등 본문 문 사는 그 도 부분 모습을 쓴

예를 들면 어느 구로동에서 어느 경관이 무고한 시민을 구타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든지 자유의제 가지고 자유토론하고 이것은 표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우팅」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일때는 緊急 散會, 「이머전시 어전먼트모션」(Emergency adjournment motion)을 통해서 의원들의 토론이 있고 이것은 표결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물론 이것은 국회가 상시 운영일때 가능하지만 우선 臨時國會라든지 또 定期國會때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리고 네번째 座席에서의 發言制度 導入問題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나라의 국회 본회의장에 가면 마이크가 달려있는데 우리나라는 마이크가 없지요. 한때 제가 있을 때 명패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여야간에 투쟁시 나무명패로 때려서 입을 찍고 눈을 찍고 해서 고착시켰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가 있으면 그런 사태가 생길까봐 안 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왜 이것을 제안하느냐 하면 IPU理事會에 가면 逐條審議때 좌석에 앉아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발언대에 나가고 들어오고 얼마나 시간낭비입니까? 그래서 좌석에서의 발언제도를 도입해서 逐條審議 補充質疑 身上發言 이럴 때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면 좌석에서 간단히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면 좌석에서 간단히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면 좌석에서 간단히 발언권 우 있고 물론 시간을 제한해 주면 더 좋겠지요. 마이크장치를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

1941年 (1945年) 1973年 (1945年) 1842年

하겠지요.

다섯번째 民願 請願制度 이것은 제도라기보다는 국회의원들한테 이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을 대변하는 기구인데 국민들이 제출하는 民願 請願處理가 너무 지연된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專門委員의 活用方案檢討, 제가 있을 때도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 서를 내는데 그것은 하나의 사설이고 논설이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연히 여당위원장의 눈치를 보게 되고 야당눈치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常任委員會 專門委員들은 國會 法에다가 身分保障을 해서 소신껏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人事上 不利益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전문위원들이 소신있게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리고 또 한가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自議員年金制。導入입니다. (本国会会 エネッ D)

여것은 세계 어느 국가의 입법부를 보아도 議員 年金制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나라만 유독 이 문제가 거론되면 언론에서 얻어맞고 국민한테 얻어맞느냐 그것은 그동안에 지금까지 지적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제도가 결여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의원님들이 입법과정이라든지 나라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좀 職務 遺棄를 했다고 국민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요즘음에 와서는 정치는 제끗한 정치를 해야 된다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된다고리고 부정을 저질러서도 안된다 그렇다면 고 法活動에 專念할 수 있도록 물러난 후에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年金制度는 導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간을 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역시 저는 제 도적인 개선중에서 생점이 있는 대목이 人事聽聞 會라고 생각합니다. 警·檢의 中立性을 보장하기 위해서 任命同意權과 聽聞會를 개최하는 문제 이 것이 여야간에 큰 생점인데 제가 여당의 위원장이 라면 이번 기회에 文民政府의 權威를 세우기 위해 서라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쭉 준비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畵龍點睛 우리가 문민정 부 출범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민주화했습 니까? 개혁을 했습니까? 그야말로 용을 한마리 그 려놓았는데 거기에다가 용의 눈하나만 점을 찍으 면 우리 입법부가 그 기능을 명실공히 발휘할텐데 왜 그것을 못하는가 OECD 회원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警 檢의 中立確保 人事聽聞會 이 것은 이번 회기에 이 特委에서 통과가 된다면 참 OECD 회원이 된 자격을 갖추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重緯 좋은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 사하게 생각합니다.

OECD 회원국다운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陳在勳敎授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陳在勳 지금 淸州大學에 나가 있는 陳 在勳입니다.

제가 지금은 대학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국회에서 議事局長이나 專門委員을 했다는 經歷을 참고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의 진술은 실무적이고 비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술내용 은 제가 요지로 자세히 적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요지를 보시면 대충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집작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서 시간을 안 넘기는데 요점을 두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가지 案입니다마는 사실은 國 會運營의 活性化方案으로 압축되겠습니다. 그래서 國會法 改正이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되는 이런 쪽으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자리에 앉게 된 것은 新韓國黨側에서 이름을 거명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부탁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국회에서 경험했던 것으로 보아서 국회에서 이 법은 고 처주어야 되겠다 이 제도는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고가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논의하고 계시는 國會法은 오히려 憲法보다 두달이나 먼저 制定된 法律입니다. 우리나라 건국과정에서 특이한 데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1號法律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삼십번이라고 하는 改正을 거쳤습니다. 그 개정의 동기도 국회의 권한을 위축시키려고 했던 대폭 개정도 있었고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도로 신장시키려고 했던 개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最高會議다 非常國務會議다 立法會議다 하는 데에서는

國會의 權限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개정을 했습니 다. 특히 그 중에서도 非常國務會議에서 했던 國 會法 改正은 대단히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 런 데 비해서 與小野大 상황인 국회에서는 국회의 권한을 대단히 신장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條文은 法理로서는 조금 무리하지 않겠나 할 정도 로 신장시킨 조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 민이 원하는 국회의 활성화는 여러번의 시도와 수 술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아까 朴敎授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 리 國會法은 日本國會法을 근간으로 거의 베껴오 다시피한 國會法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국회법을 가지고 아주 국회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에 비하면 훨씬 문제 없이 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같은 국회법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國會法 改正이 기론되 는 이런 議會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권한이 많이 신장되고 국회가 많이 활성화된 데서 제가 국장을 하고 전문위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서 국회의 활성화를 굉장히 바라고 國會法의 改正 으로서 그 妙가 찾아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國會法 改正에서 國會 活性化의 妙를 찾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비교적 政黨制度가 약했던 5대국회 때까지는 국회가 상당히 活性化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국회가 위축되기 시작한 것은 소위 5·16이후에 정당제도를 강화하는 데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국회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가 國會法의 條項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좀더다른 시작에서 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실지國會法은 그렇게 중요한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國會法에는 憲法에 있는 조문들을 다시 옮겨온 再編條文과 議事規則的인 조문들이 섞여 있는 것인데 國會法에 제도나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조문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國會法에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나라 國會法은 지국히 政黨의 권한을 강화시킨 國會法입니다. 여기 總務團에 계신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院內總務 중심의 國會法입니다. 院內總務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시켰고 議長의 권한을 약화시킨 國會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회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國會法 을 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점도 유념하시면서 國會法 論議가 있어야 되겠고 國會法 論議가 憲法 상의 국회의 권한을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國會法 논의가 되어야지 다른 정치적 쟁점에서 國會法 논 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 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國會法 改正을 할 때 보면 다수의 횡 포나 소수의 보호라고 하는 무작지 명제만을 가 지고 國會法 논의의 초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간은 지나지 않았겠는가 문민정부 시대에 들어왔고 李교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 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는데 이제 차원 높은 생 각에서 미시적인 생각에서부터 또 거시적 입장에 서 國會法 改正을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국민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저는 국회에 오래 근무했습니 다마는 국회나 국회의원을 위한 國會法 改正 논의 보다는 국민이나 정치발전을 위할 수 있는 國會法 개정에 시각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좀 집한 말씀을 올려서 죄 송합니다. 더우기 지금 국회의 국회의원 수를 들 여다 보니까 與野가 거의 伯仲勢 시대에 놓여 있 습니다. 50대 몇십프로인가 하는 여야를 구성하고 있는 듯한데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지난 날 같은 少數黨과 多數黨의 문제로 國會法을 보지 말고 진 짜 회의의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國會法 改正으로 시각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유민을 받아 트플함

아까 李교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소수당이 언제인가는 다수당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입장에서 만 보지 말고 앞으로의 국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좀더 발전적인 國會法을 개정해 주시고 국회의 어떤 기능을 더 발전시켜야 하겠다고 하는 면에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국회나 정치에 대해 국민의 미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미움이 있는 것이지 국회의 발전을 바라고 있지 않는 것 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은 국회의 발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國會法 改正을 좀더 발 전적인 데에서 출발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라는 것은 의견의 조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보면 문제가 국회에 들어왔을 때 의견이 조정이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나빠진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사실상

이런 기능이라면 국회가 국민에게 사랑을 못 받는데도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國會法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이 國會法은 不信의 법률이라고 봅니다. 이 國會法에 보면 대 개 외국 것을 빼껴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법조문 에 특유한 것이 있다고 하면 상대방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불신에 대한 장치조문들 입니다. 우리 國會法에 그런 조문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장 치조문을 가지고 국회의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 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國會法에 상당히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 장치조문을 가지고는 아됩니다. 그러니까 國會法을 개정할 때는 상대방 의 신뢰 그리고 권능을 꼭 지킨다고 하는 전제하 에서 출발해야지 國會法을 안 지켰다고 해서 어떻 게 합니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國會法이 설령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거나 또는 대개 좋은 아이디 어, 아주 강력한 표현의 강제규정을 하거나 그래 · 봐도 지키지 않았을 때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 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라리 成案이 안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개정을 해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국민에게 위법에 대한 면역감각만 주게 됩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 **对:中** 下次 是下之事 多合的 基制等 含义计 号

도 고래서 사실은 개정을 열심히 했는데 잘 지켜지 지 않았던 國會法 條文 명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 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國會法 84조8항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下豫決委員會는 稅目 또는 稅率과 관계있는 법률 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歲 入豫算案은 이를 審査할 수 없다」하는 조문이 있 줍니다. 이것이 바로 豫決委員會의 조문입니다. 지 급~常設化問題가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 조분입되다. 아이 조분은 88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거의 10년에 가깝습니다. 그 요지는 여러분이 아 지다시과 租稅法律主義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아까 李範俊敎授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 는 사실상 국회가 예산심의에 대한 신중을 기하려 면 이 조문만 가지고도 상당히 신중한 심의가 가 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뜻은 豫算案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예결위원회의 審査전에 세입관계법이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인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외 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번 예산도 그렇고 매년 예산안의

장태에서 법률의 개정안 상태에서 예산인을 냅니 다. 사실 이 조문은 거의 死文化되어 있습니다. 저 느 常設化問題에 앞서서 이 조문이 먼저 활용되는 국회를 운영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다. 이 조문이 실제로 운영된다면 국회의 豫算審 議權은 취행법 속에서도 상당히 강화된 국회운영 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與小野大 國會 에서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된 것입니다. 그 런데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이 조문이 豫決委員會에서 한 두번 거론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저도 기억됩니다마는 정부는 이 조문에 관 해서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부의 견해는 제가 봐서 정당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정당한 해석이라고 한다면 국회 와 정부간에 이 조문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슬기 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조문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왜 여야는 협의를 했고 정부는 이 조 문을 공포를 합니까?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國會法을 개정할 때 좀더 신중하고 가능하면 저는 법의 개정보다도 현 행법의 최대 활용속에서 국회의 권능을 최대로 찾 아보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결 위원회의 常設化問題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의 주 제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해결이 안됩니다. 국회가 상임위원회 상설화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 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왜 국회의 상설화 를 싫어하느냐 하는 문제도 국회에서 생각해야 합 **河中,**於汉子書 多数包含 多多,身件中国主题的工程

또條文이 死文化 된 것 하나 더 말씀드리지요. 아까 이범준 진술인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같은 조문 84조5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豫算決算委員會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 용을 존중한다 이렇게 법을 改正했습니다. 이것이 90년도에 개정된 조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상당히 업무파악을 하고 예산심의를 했는데 그것을 백지 화한다는 것은 국회에서의 당비 아니냐 이런 뜻입 니다.

그런데 실제 그해 당해년도 예결위원회에서 소 관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가장 묵살한 해입니다. 그 조문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개정을 하기 위한 심의를 뭐 하고…… 바로 그 연도입니다.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것도

좋은 제도입니다. 國會法 53조에 보면 定例會議를 常設化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강제 규정을 했습니다. 저도 국회에 오래 있어 보았습니다마는 참 좋은 조문입니다. 그러나 그 改正 當該年度의 국회는 국회 스스로의 사정으로 6개월간 정례회의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러고서 무슨 개정 논의를 합니까? 먼저 법을 지키시는 일부터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하나 예를 들면 總選擧후 最初의 臨時國會 召集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개가를 올렸던 법조문 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서 민망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고려니까 국회법 개정을 아무리 강제규정으로 하고 만장일치의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實踐意志 가 따르지 않았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 다. 국회법의 일종의 헌법적 조분 외에는 의사규 작적 성격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國會法 改正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하는 생각에서 국회법 개정을 반드시 實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또 한번 사문화된 법률을 제정하시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국회에서 여러분들을 오래 모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실은 저는 부탁 받은 것이 없습니다. 부탁 받은 것이 없어서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많이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제가 국회에서 근무했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立法權 行使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권 행사가 실제 국민에게 부끄러울만큼 대단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진술인께서도 거의 다 말씀이 있으셨고 기조 발표를 하신 위원님들도 전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立法權 行使를 強化하자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고런데 우리 국회에서의 입법권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국민의 참여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단편적인 하나의 輿論調査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94년에 國民法意識 調査를 한 것 을 보면 국회에서 만든 법은 국민인 우리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그렇습니다라 고, 대답한 사람은 11.7%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 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12.4%입니다. 그 리고 설문을 여러 개 나눠 놨는데 부정적인 시각 을 가진 사람이 60%가 넘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국회에서 만든 법을 국민이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責任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국회 한테 있는 것입니다. 의회 입법을 절대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회 이런 나라에서 우리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법의식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의회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오늘 해주시는 것 참 고맙습니다. 제가 봐서는 국회법 공청회보다도 입반법의 공청회가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법조문 중에서 國民의 利害關係가 따르지 않는 법조문이 거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은 법의 심의에 대해서 거의 100% 소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법이 국민의 사랑을 받기 어렵고 국회의 사랑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 동안에 졸속 입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심한 경우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법안이 국회에 접수되고 통과되는 데까지 하루나 이들만에 통과된 법률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논문에도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하에서 사실 법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 예산에 보면 法律弘報費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정부가 통과된 법률을 홍보시킬 것이 아니고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국민으로 하여금 내 권리가 왜 제약되었는지 이런 것을 국민에게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이 법률 홍보에 최선의 방법입니다. 선진 국가에서는 모두 하고 있는 방법인데 우리 국회는 오직 速度主義입니다. 이런 점은 의회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도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나라는 常任委員會 中心主義를 국도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앞에 두 분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는 이런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전문성을 제고하려고 했습니다만는 실제는 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가 국회의원 중에 그 소속 의원이 아닌 분들은 법안에 대해서 숙지할 기회를 뺏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고래서 日本 國會法에도 아무 규정이 없던데요. 제가 일본을 한번 가 봤더니 運用을 좀 잘해요. 문제가 조금 있다고 여야가 생각을 하면요 국회 회의할 때 의사국장이 와서 보고합니다마는 그것 이 국회의 접수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국회법에 접수를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은 보니까 우리보다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좀 느슨하게 하고 있는데도 조금 중요하다고 하는 법 안은 본회의에서 與野가 2분 또는 3분씩이라도 토론하고 넘어 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국회법 의 개정 없이 의원에게 숙지시키고 국민에게 숙지 시킵니다. 관심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일본 국회법 이나 의사 규칙에도 찾아 보니까 그런 규정이 전 혀 없어요. 그렇게 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혹시 잊으셨을까 해서 말 씀드립니다. 하는 한 등 보고 되는 그 그

우리 나라에 지금 800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팔 백사오십개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법률 을 지금까지 개폐한 총량은 5,000개 조금 넘습니 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다 국회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非代議機關인 최고회의에서 만든 법률 이 1,008건 비상국무회의에서 만든 것이 넉달간에 270건을 만들었습니다. 입법회의에서 189건을 만 들었습니다. 거의 20여%의 법률을 비대의기관에 사 마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법률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지 도 모릅니다. 한번 성상 원은 가운 가운데 보면 보면함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委任立法의 문제를 자꾸 제기합니다마는 위임입법의 극대화의 원조는 사실 非常國務會議입니다. 이 비상국무회의 입법의 문 제점에 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 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法議長의 權限強化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 神教 多山 海洋的 [7] 彭 山 的诗 医克尔 医骨条件

두 분 다 언급이 있어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 니다. 실제 우리 나라처럼 의장의 권한이 약한 나 라는 없어요. 그리고 전부가 다 원내 총무한테 갖 다 맡깁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이지요. 아 까 두 분께서도 국회의장의 법률안 해석권문제 것이지요. 의장의 법률안 해석권은 그것을 의심하 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의심된 다면, 그것은 명문화해야지요.

를 그 다음에 公聽會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에 대해 여러 가지 시각을 달리하시는 말 |쏟이 계셨는데 우리 나라 공청회의 議事定足數 問 題는 확실히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81년도 국 회법을 개정할 때 착각을 한 것입니다.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는 위 원회 회의로 본다 이렇게 하니까 정족수 문제가

여기에 다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 청회는 의견수렴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아서는 위원회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 시에 어떤 분이 소홀히 할까봐 이런 글을 쓰신 일 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조문에다 갖다 집어 넣 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보아서는…… 잘 고쳐주시가 바랍니다. 부분부 수 불론는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써 놓은 것은 몇가지 있습 니다마는 사실 제가 언더라인을 다 달아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것 같아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에 근무하면서 이 국회가 활성 화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提言을 하나 트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이런 점은 안 되겠다 이런 점은 제도로 개선해야 되겠 다 하는 점을 제언을 드리는 것이니까 예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對政府質問의 경우에 國務總理를 상대합니다. 국무총리를 상대해 가지고 개헌문제를 묻고 정계 개편을 묻고 이런 얘기를 묻는다는 이것은 제가 봐서는 국회가 자기 스스로 격을 낮추는 아주 잘 못된 관행입니다. 는 결혼하는 전 토를 불품을 수

그 문제는 여야간에 의원들이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國會 運營制度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는 생물은 문을 하는데 사고

의나?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애기하실 기회가 대 정부질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총리를 상대로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야 맥빠진 얘기이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보를 그르는 목을 모르는

- 우리나라에도 3選改憲 때 여야가 토론한 先例가 있습니다. 그때에 3선개헌안에 대한 제안자가 있 었기 때문에 제안자로서의 議案을 제출해 가지고 토론을 했던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선 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물수들은 지원 등을 모든 물은

일반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는 회의는 의안없이 개최할 수 없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 이 봉쇄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으로 봐서 한번 쯤 생각해 봐주십시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 되다. 그리 부모를 하기도 사람 등을 유효한 중

실제 國會가 立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런데 제가 국회에서 실무적으로 여러분을 보필하 는 동안에 느낀 것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 **知**。 斯·蒙·泰斯·泰州·农民党 医腹膜炎炎 医皮髓管

어느 회기인가 黨도 결정했고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법이 家族法입니다.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법을 폐기하기로 전문위원들이 다 써놓고 했는데 하루 아침에 가족법을 개정하라로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朴大統領 계실 때입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여성단체에서 근혜양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국회가 주체성이 없는 법률을 개정해 가 지고 **** 그때 모든 홍보는 안 되는 쪽으로 홍보 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말로 국민 을 참여시키는 가운데에서 *****

여러분들이 법안 심의할 때 보면 여야간에 협상을 하십니다. 국민의 여론을 듣고 여야간에 협상을 하여야기 어째서 법이 여야간 협상의 대상입니까 국민의 뜻이 전달된 속에서 여야간에 협상을 하여야 됩니다.

를 그런 면을 앞으로 국회운영에서 바꾸어!주시기 를 바랍니다.

專門委員의 任用節次도 유신국회 때에 변한 것입니다. 유신국회 전까지는 전문위원의 임용절차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개선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처조직이 개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모조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피부를 맞땔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같은 현장중심의 중언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도 오랫동안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관료도 관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에 대한 판단은 의원 스스로가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하는 議會立法의 原則에 의해서 재삼 생각하시는 입법을 많이 하셔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金重緯 고생하셨습니다. 국회에 산 층 인답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O陳述人 柳勝男 앞서 세 분의 진출인께서 중요한 생점은 많이 부각을 시켰고 대개 논의과정에 큰 이견은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陳在勳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制度 차체가 곧 하나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국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국회의 입법활동이 활성화되고 국회가 수행해야 할 본원적

인 기능이 잘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 은 저의 진술 서론부분에서도 상당히 강조해서 이 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좋은 지켜야 할 규범을 법에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 요합니다. 반면에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는 데 법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운영의 현실에 비추어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자 할 경우에 현재의 시대적 인 상황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앞으로 좀더 발전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지킬 수 있는 새로운 文化 내지 政治行態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국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반 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 명합니다.

앞서 진술인에 의해서도 현재 韓國 國會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단편적으로 치적되어 나오기는 했습니다. 저는 한국정치 현실이 직면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국회가 국회 스스로 판단하에 자체내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권력 구조는 고도로 중앙집권화되어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 文民政府로 넘 어오고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권력구조의 집중화 정도가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 비교해 볼 때 아직도 크게 탈피 하지는 못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 운영에 국회 외적인 요인들이 아직도 작용할 수 있고 작용할 소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의 다른 변화와 함께 이울러서 와야 효율적인 국회상을 정 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 시점에서 국회법을 개정하는 데 단편적 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검토 가 필요한지 여기에 국한시켜서 중복되지 않은 범 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치현실을 진단하고 또 어떠한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어떠한 전제하에서 현실을 보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느냐의 기본 전제는 굉장 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國會制度改善特委 政治

小委員會에서 각 정당의 기조연설을 보았습니다. 이 기초연설문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큰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쭉 흘러간 기본적인 내용은 여당의 기조연설에서는 상당히 능률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국회를 능물적으로 운영하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국회가 변화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체가 제일 강조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이것이 선거법이나 다른 정치제도 개선과 관련되어서 제기가 된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마는 그러면서 깨끗한 정치풍토의 조성, 새로운 정치문화의 창달을 與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측면이라고 느꼈습니다.

반면에 野黨 쪽에서 나온 기조연설에는 국회운 영의 민주화와 공개성을 중요하게 부자시킨 감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쟁기회의 균등 화, 社會平衡의 문제를 여・야가 동일하게 중요한 기본전제로 취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체에서 볼 때 言說的인 의미에서는 여 이간에 의견대립이 없고 별 차이가 없어서 국회 법 개정이 원활하고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될 것이 다 이렇게 전망도 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자리 에서도 그러한 견해를 괴력한 진술인도 있었습니

불행하게도 저는 앞으로 국회법 개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민주성을 강 조하고 있는 야당의 경우와 능률성과 효율성을 강 조하고 있는 여당의 경우에 부딪치는 부분들이 앞 으로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社會平衡을 같이 강조합니다마는 여기에 곁들여 서 다른 정치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여 야 간에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國會法改正에 국한시켜 놓고 불 때 저는 세 가 지의 기본전제를 중요하게 취급했습니다.

부에 들어서면서 많은 정치개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민주화 방향으로 많이 변하고 있고 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정치를 정착하고 제도화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데 이 民主性의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수 있겠다 그러면 민주주의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피하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소주자의의견이 자유롭게 표명이 되고 강제에 의하지 않고 衆議에 따라서 결정하는 방향으로의 절차가 정착

되어야 하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을 볼 때 국회의 立法活動이나 國會의 運營은 일정한 주어진 시간내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만약 소수자의 의견이 다양하고 또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결정하지 않고 국회운영을 지연시킬 경우 무결정 상태가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일정한 시간내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리고 衆議에 의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리서 민주성을 강조하면서도 능률성을 감안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번째 기본전제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현재 고도로 중앙집권적이고 특히 통치권자에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권력구조하에서 의회의 기능이 위축되는 것은 議會外에서의 정치구조의 영향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활동은 효과적인 對政府의 행정통제라고 이론적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효과적인 行政統制方案을 모색해야 하고 이 행정통제의 중요 성을 국회법의 개정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세 가지의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세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기본전제가 경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서로 상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에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현실을 진단하고 어떠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상충한 견해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고 처는 여러 가지 改善方案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 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행정통제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우선적으로 보았고 아울러서 등률성도 검 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백했습니다. (2011년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당의 기조연설문에서는 강 조하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다 빠져 있습니다마는 國會議員倫理法 制定의 문제가 새로운 정치행태 정치문화의 창출과 관련해서 여당이 중요한 이슈 로 제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입법기능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 14대 국회 총체적으로 놓고 볼 때 월등하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60%가 넘고 실제 可決된 법안의 입장에서 볼 때는 80%가 넘는 비중입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두가지 측면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산업사회가 성숙하고 후기 단계로 접

어들면서 행정권력이 극대로 비대화되어 왔던 것이 세계의 보편적인 흐름이었고 우리나라는 산업화이전부터 권위주위적인 정치체제에서 행정권의 肥大 집중화현상은 지속되었습니다마는 일단 행정권력의 집중화현상은 산업사회가 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국가나 정부에 의해서 그 모순을 치유해 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행정권력이 극도로 비대해 왔던 보편적인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구 민주주의국가에서 행정권력의 비대 현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습 니다. 앞으로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가 이러한 요인들을 중요하게 봐야 할 측면이 있 기 때문에 약간 이러한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겠습 니다.

첫번째는 지금 현재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구조가 이렇게 극도로 분화될 경우에 미래에 대한 豫測性은 상당히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입법을 하지 못 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행정부 의 자유재량권이 증대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산업사회의 변동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입법부와 행정부를 비교해 볼 때 입법부의 전문인력은 정말 미미한 수준이고 행정부의 경우는 풀타임으로 매일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화하는 전문인력의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행정부가 월등히 유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1970년대 중반에 특히 이 문제가 현안 적인 정치이슈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국 입법부 의 GAO라든지 CBO 등등 여러 전문 입법보좌 지원기구가 있는데 이것도 전부 70년대 후반에 입법 부가 행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입법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문소작기구를 확대해 왔던 것입니다.

도 여기에 아울러서 행정부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수 있는 배경 중의 하나는 정보에 대해서 신속하게 접하고 행정부에 불리한 정보는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부 권력증대 현상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마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는 1970년대 중반에 선샤인 액트(sunshine act)를 만들어서 情報公開法을 입안하는 체제로 갑니다. 이 정보공개법을 입안하는 배경을 보면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 물론 그러한 민주가치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법을 추진했던 이유는 행정부가 어떠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통제하고 싶어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공개하도록 갔던 체제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議會 對 行政府關係에 비교해 볼 때 행정권력을 축소하는 방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행정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비교적 원활하고 신속하게 동원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쪽 부분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개 立法機能을 활성화하는 데 앞으로 한국의 국회도 장기적인 과제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여러 부수적인 정부조직법 등등 사무처법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이 전문적인 기구를 입법부내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 은 豫・決算의 문제뿐 아니라 정책을 평가하고 분 석하는 과정 또 입법활동 어떠한 법률안을 제안하 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구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놓고 볼 때 항상 기득권자 집권층의 권력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양 보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확대 보호하는 방향에서 민주정치가 제도화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민주주의정치자를 투영하고 있고 현재도 저의 입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파라서 脫權威主義時代 文民政府下에서 국회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데 많은 부분 야당의 입 장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거기에 근거해 서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연중 常時運營體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진술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의장은 年初에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또는 운영위원회과 협의해서 연중 상시운영의 대강의 체계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것은 연중 최소한 1회 이상 本會議 集會日時를 특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저희는 가을에 정기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는 춘계 3월 내지 4월에 1회 이상 본회의 집회 일시를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關議日時를 특정화할 경우에 어떠한 효과가 있 느냐, 일단 開議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대립 갈등 또 밀고 당기고 하는 현상이 없어질 것이라고 봅 나다. 이 나는 그는 등을 무슨 사람은 있는 것

- 그리고 두번째로는 政府가 회기 비회기에 관계 없이 法案을 연중에 수시로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촉진시키는 계기도를될 것입니다. 현재는 법안이 가을 定期國會에 편중된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가 급적이면 심도있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 豫決과 관 계없는 법률안은 봄에도 많이 심의하도록 特定 委 員會를 春季에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한 효 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본회의 일시가 특정화되어 있을 경 우에는 예측가능하게 본회의가 있으니까 의정활동 을 준비하고 의원입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정 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國會年中常時運營이라는 측면에서 대개 최소한 1회 이상 본회의 집회일시를 특정화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 福州中国企业 多点的图 建铁铁 建基金 法国建立

· 그리고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최에 있어서 i 회는 定例化하도록 하는 방안도 원칙적으로 저는 동의 하고 있습니다. 중심 본관문학 소문을 수 중심한

그리고 법률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最 小審査制度의 확대라든지 그리고 逐條審査를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좀더 심도있는 입법활 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公聽會와 聽聞會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었 고 저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는 입법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안건의 경우는 청문 회제도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 눈 것이 사실입니다. 물 물 기 기 교환 이 가운데

- 미국의 입법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에 관련 된 논문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일단 미국에서 현재 공청회나 청문회제도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은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집단들 또 이익을 가 지고 있는 견해를 달리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利益集團만 청문회에 참석하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一般公衆의 輿論은 청문회 과정에 잘 반영되 치 않습니다는 한국도 부 분들로 한국소 보였고

실제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의 기회는 보장되 어 있고 확대되어 있지만 특히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견해는 공청회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 에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 그를 보고 하는 그들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일단 우리의 경우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 제도가 그렇게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 단계 이고 앞으로 공청회나 청문회의 陳述人을 어떠한 접치를 통해서 選出할 것인지 하는 것이 공청회를 통해서 내실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 **到中部**,在 医巴里达斯格尔克斯 医皮基氏 医原物病

ユ리ュ 人事聽聞會制度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李範俊선생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 관련해서 대개 인사청문회제도가 나오면 일부 정당에서는 大統領의 人事權 侵害이지 않느냐 하 는 바론도 제기되기도 하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 손하 것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러데 꼭 자격있고 적절한 사람이 그 지위에 지명되었느냐 하는 資質檢查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 국회에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적절한 사람인지 를 청문회를 개최해서 판단한다고 해서 그 機關의 政治的인 中立性이 훼손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임명된 사람이 과거의 행적을 놓고 볼 때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쭉 일해 왔느냐 그 능력을 검증해서 너무 정치적인 색깔이 강하다면 그 인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 타고 생각하 봅니다: 五世() 사 수를 속을 가는 것을

그 차원에서 다른 기관의 장에 대해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또 어느 특정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꼭 그 기관의 중 립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고 앞으로 미 국과 같이 사오만명, 광범위한 任命同意案으로 확 대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저희 국가사정을 감안 할 때 소망스럽지 않다고 생각 해 봅니다마는 일 단 核心的인 高位層에 대한 人事聽聞會制度는 과 감하고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음 음음을 하는 음을 들은 모든

· 앞서 어느 진술인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일단 國政監査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국회내에 전문적인 입법지원 예산분석 정책평가 등 모든 것을 합해서 그러한 기구가 국회내에 정 립될 경우에 아니면 監査院이 국회내 소속으로 조 직이 개편된다든가 여하는 專問機構가 국회내에

설립될 경우에는 저는 국정감사는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문기구에서 분석하고 만 약 현재 어느 부서의 정책집행이나 예산집행에 문 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國政調査權을 발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국회내에 그러한 전문 기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 제도는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국회내의 전 문기구개편문제와 국정감사제도라든지 예·결산위 원회분리 통합의 문제가 다 여기에 연제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일단 豫 決算委員會의 分離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책평가 예산심사 등 전문기구설치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정리해 가면서 여기에 대한 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監査院도 국회소속으로 할 것인지 그것이 하나의 검토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증인 참고인 감정인 채택 등 出席要件을 가급적이면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國會運營의 活性化方案을 간단히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常任委員會制度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적으로 미국식의 제도에 근거해서 같이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필요하나 하는 것은 앞서 여러 진술인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지만 無任委員會制度로 갈 경우에 여기에 두가지 문제는 사전에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議事定足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정족수 과반수 이상의 참석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특히 저희국가의 경우에는 여러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개의될 경우에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질의나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의사정족수를 완화시켜서 이 문제가 의결하지 않는 이슈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兼任體制로 갈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 위원을 배정할 경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별로 상임위원회를 기능별로 대개유사분야로 구분해서 개의일시를 달리하는 방법도검토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동

일시기에 전 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국감기간으로써 全常任 委員會가 풀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러면 兼任委員會制度로 잘 경우에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 때는 交涉團體別로 자체 조정해서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어느 위원이 참여할 것인지 하는 것은 교섭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조정 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일단 이 런 두가지 문제는 兼任委員制度로 넘어갈 경우에 는 중요하게 보아야 된다고 생각해봅니다.

國會內의 發言制度는 가급적이면 국회입법과정에 자유롭고 다양한 견해가 표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발언기회를 확대하고 제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야당의 현재 나와 있는 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30분으로 발언 시간을 연장했다 해서 반드시 30분을 다 채워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봐야 할 것이 이 런 발언기회가 제도적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중요 한 생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해서 국회에서 발언하는 풍토의 조성도 아울러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고 그러한 풍토가 정립이 될 경우는 발 언시간을 국회법상 확대해 놓아도 실제 운영에 있 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 각해 봅니다.

對政府質問制度에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야당 입장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에서 대개 시간은 좀더 확대하고 질문의 방식에 따라서 는 一問一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느 문제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일단 영국이나 구라파 의 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식으로 先 答辯 後 口頭質 問하는 체제로 가면 좋지 않겠나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정부부서의 책임자가 와서 답변을 할 경우 에 먼저 현황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듣고 나서 질문에 들어가면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파고 들어가서 질문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선 답변을 듣고 후 질문을 할 경우에는 좀더 어떠한 현황에 대해서 고숙히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시간 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정부의 질문과 대답방법은 일 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보고서제 출 의무조항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이 의도적으로 지연하지 못할 예방적인 장치는 필요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國會倫理基盤擴大 倫理法制定 관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현재 시점에서 이 부분을 앞서 陳교수님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특히 관련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윤리법을 제정해 놓아도 그것을 지킨지 않으면 死文化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1958년도에 公職者倫理規範이 제정되고 64년, 67년 이후에 윤리규정체제로 갑니다마는 미국에서도 동료의원에 대해서 특히 懲戒하는 예는 적은 숫자입니다. 특별히 社會問題가 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중징계쪽으로 가기도 하고 만일 윤리위원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심의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징계대상자가 사퇴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해서 동료의원의 징계를 한다든가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피해왔던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투히 국회의원의 윤리라든지 지켜야할 규범, 倫理綱領이나 倫理實踐規範 등은 가급적이면 꼭 지킬 수 있는 것만 명문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20불 이상의 접대를 받으면 향응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의회에서는 자기 업무에 관련된 단체의 사람과 여하는 20불미만의 식사를 할경우면 어느 정도 대접받는 것은 좋지만 20불이상의 대접을 받으면 윤리규범에 벗어난 것이고 그것은 향응으로 들어가고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조항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의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부적인 규정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나는 현재 나와 있는 國會議員 倫理綱領實踐規範 이것만 잘 지켜도 지금 현재 政治不信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마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가의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래서 별도로 지키지 못할 국회의원윤리법을 제정하면 國會不信만 더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되 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나와 있는 윤리규범을 어떻게 내면화하고 지킬 것이냐 국회 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 니다.

변**감사합니다!** 후 가능하는 울충수 공원 수 나를

○委員長 金重緯 柳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

中央公司 医自己性 医克里氏 医克尔氏病 化

모든 제도는 그 시대에 또 그 문화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분 교수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는데 혹시 네 분 교수들께 질의하고 싶으신 위원 계시면 여야 한 분씩 교대로 질의를 하되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〇尹源重委員 [세]분 남왕 주셔져는대단히 고맙습 남다는 이 프로프로 교환 관환 현장 기계를 받는데 다

특히 선배의원님으로 이미 국회의원 생활을 하셨던 李範俊교수께서 직접 나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저희가 그 동안 알고 있는 바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 43페이지에 보면 行政府 監督 牽制機能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위 말하는 삼권분 립에서의 체크 앤드 밸런스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사이비 민주국가 이고 이런 현상은 시정했어야 한다 또 그런 국가 는 정치적으로 덜 발달된 나라의 형태다 라는 말 씀을 하셨는데 그들이론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대국가에서 입법 행정 사법에서 사 법은 별도로 치더라도 行政과 立法이 牽制와 均衡 을 유지하는 일이 대단하 어려운 형태에 각국이 지금 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이 고도로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의회가 이 行政府의 專門化 多樣化를 구체적으로 견제하 고 체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균형이 많 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는 食量한 本本 불士工

파라서 이 三權分立制度를 재배적인 의미로 명확히 선을 그어서 어떤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하는 채념정립은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것 아닌가?

파라서 지금 행정의 전문화 고도화된 기술을 따라가기 위해서 立法府가 취할 수 있는 내용은 물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牽制裝置도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의화내에 행정부에 버금가는, 행정부보다도 더 나은 專門人力을 다양하게 포용함으로써 비대해 질 수밖에 없고 파워풀해 잘 수밖에 없는 행정부를 전제해야 되는 흐름으로 각국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두번째 人事聽聞會制度 도입과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예를 드시면서 여러 주요 직책의 고위관료

판직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의화가 이를 청문회를 통해서 걸려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민주적 통제가 안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또 그와 견주어서 OECD 가입과 연결되어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人事聽聞會制度는 미국 혼자만이 취하고 있는 오래된 관행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 인사청문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다른 나라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주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監査院과 관련되어서 감사원의 징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여기 문구에 보니까 감사원이 들으면 대단히 서운한 과격한 표현이 있습니다. 大統領傘下의 감사원의 존재는 政治的 道具化의 가능성이 있어서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감사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4부로서 존재하는 나라 그리고 의회의 직속으로 운영되는 나라 또는 우리 나라처럼 소속은 행정부에 있으면서 운영은 독립기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많은 나라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현재 우리의 감사원은 행정부의 행정 행위 규체행위를 여러 가지로 牽制하고 監査함으 로써 상당한 정과를 거양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 니다.

참**이상입니다.** 전상을 보고되고 있다. 오르토 보호 등이

○委員長 金重緯 一問一答으로 하다보면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해 보겠습니다. 질문도 5분 이상 안 하기 답변도 5분 이상 안 하기 그래서 한분에게 10분 이상 시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陳述人 李範俊 간단히 대답하겠습니다.

尹委員남 제 말이 제일 아팠던 모양이지요. 제애기가 아니라 제가 인용한 것은 독일학자 뢰벤스타인의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제3세계에 新大統領中心制가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형적인예가 우리나라와 가까운 데는 인도네시아지요. 그나라는 헌법에 三權分立이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입법부 사법부가 다 대통령의 시녀로서작용하고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시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작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 에서 얘기한 것이고 행정부의 비대화 현상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크를 당하 지 않고 비대화 현상이 그대로 마음대로 놀아나라 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번째 人事聽聞會 이야기는 미국에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나쁜 이야기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미국을 인용했는 다 하면 이것이 바로 몽테스키외의 「스피리트 오브 더 로우(Spirit of the law)」를 그대로 현실정치에 적용한 제도인데 그것이 立法府 行政府 司法府가 얽히고 얽혀서 이것을 도표로 그리면 대통령이고위적을 인사하면 입법부가 청문회를 통해서 어드바이스 앤드 컨센트 (Advice and consent)를하고 또 입법부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서명을 했으면 그것이 사법부에서 또 違憲審議權을 가지고 있고 이 3권간의 균형이 제대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국가가미국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尹源重委員 참고로 저는 아파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저는 텍스트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陳述人 李範俊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監査院은 정치적 도구화가 되고 있다고 한 게 아니고 현 제도하에서는 정치적 도 구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것을 獨立機構化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것은 憲法改正問題가 개입되기 때문에 당장 이루 어질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〇委員長 金重緯 그 다음에 辛基南委員남 하세 8

〇辛基南委員 제가 한 마디하겠습니다.

柳勝男教授에 여쭙겠습니다. 人事聽聞會를 정부고위직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공무원에 게 人事聽聞會를 할 수 있다 또는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李範俊教授와 柳勝男教授가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저는 반가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與와 野가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 중의 하나 가 그것입니다. 달리하는 이유가 그것이 3권분립 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의 行政權을 위배하 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을 與黨側에서 하고 있 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주장을 펴왔는데 두 분의 교수께서 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三權分立을 방해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三權分立의 정신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대단하 반잡습니다.

그런데 李範俊教授와 柳勝男教授 두 분이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것을 柳勝男 敎授께 묻겠습니다. 李範俊敎授께서는 국회 동의 라든지 승인을 얻는 그런 國務總理 大法院長 憲法 裁判所長 여기에 人事聽聞會制度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檢察廳 警察廳 安企部 國稅廳長 軍의 긴 부 이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개 최하는 것이 바랍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柳勝 男敎授님께서는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헌법상 국 회 동의 또는 승인을 요하는 자 또는 국회의 선출 을 받게 되는 자에 대한 것만은 이렇게 동의권 승 인권을 효율화시키는 측면에서 인사청문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 면 국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檢察總長 警察廳長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청문회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 다.문항 2회 의 공통의 등이 하루 기업을 통해 보다

○陳述人 柳勝男 제가 이 쪽을 검토하면서 辛委 員니께서 하신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 다. 그런데 지금 國會法 테두리내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 만일 중요한 정부 직책의 國會 任命同意가 필요한 부분들은 연관된 법개정이 된다면 또 확대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는 하겠지만 현재 시점 에서 특정의 부서를 지칭하는 것은 國會法 자체내 에서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표현했 던 것이 일단 憲法上에 우선 국회동의가 필요한 職 이것은 분명히 그쪽으로 당연히 가야 되고 그 리고 국회에서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지위들 앞으로 법개정이 어떻게 되든지 그러한 것은 일단 은 그 법의 취지에 맞추어가지고 국회내에서 인사 청문회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 **山中**科 李原传 中国 电影称 电超离器 医乳管管

○辛基南委員 딱 자른 것은 아니지요? 동의 중 인 요하는 것만 하고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는 아니지요? 그 얼마 그 어떤 물이 되는데 너무 나는

○陳述人 柳勝男 예,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 体、全数公司等的企业工作,在企业的企业和企业

〇委員長 金重緯 그러면 洪準杓委員 질의하세요. 〇洪準杓委員。人事聽聞會制度導入斗。관련해서는 우리 李範俊敎授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 아까 李範俊敎授님 말씀하신 칼 릐벤스타인의

新大統領制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朴正熙大統 領 시절에 소위 유신헌법이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에 의한 의회지배는 維政會라는 형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의 헌법은 사 실 新大統領制 憲法이라고 아마 그 당시에 세계에 공인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마련 되 이 헌법은 6·10항쟁으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마련한 헌법입니다. 이 헌법을 두고 신대통령제라 느니 어떤 식으로 할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李敎授님이 인사청문회를 아마 도입하자고 주장 하신 근거로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은 헌법에 의하여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 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미국 헌법 2조2항에 는 고위공직자들은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대 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국의 고위 공직 자 이것이 아마 심사만명 정도 되지요? 물 사물을

○陳述人 李範俊 고위공직자가 그렇게 만까지 안 잡니다. 청문회 대상은 몆천명입니다. 교육 학교 교육

〇洪準杓委員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마 만명은 넘 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국무총리 감사 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통령이 공무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國會 同意를 얻어야 하는 조항은 이것이 한정적 열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시적 열거라고 보십니까? 취후 구성들을 무슨 수

헌법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대 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말하자면 3權分立 原則下 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동의를 얻어 야 하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관소 장은 헌법에 각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111조 3항 제4호에는 헌법재판소장에 관한 조항이 있고 104 조는 이것이 대법원장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 항들이 한정적 열거라고 보십니까? 예시적 열거라 고 보십니까? 이 전문 사람 사고 하는 화국 이 그 도움

○陳述人 李範俊 글쎄 그런 법률용어는 모르지만 그것은 헌법정신에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느냐 하면 역시 3권간에 서로 견제를 해야겠다는 그런 원칙 정신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〇洪準杓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정적으로 딱 이 사람들에 한해서만 國會의 同意를 요해야 하는 조항인지 안 그러면 나중에 5급 공무원도 이 조항 이 없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조항으로

O陳述人 李範俊 그것은 비상식적이지요. 檢警 그 기관장들이 5급 공무원입니까? 왜 그렇게 비약 하십니까? 그리고 질문하실때 공손히 해주세요.

TRING BEEN HARO

내가 뭐 여기에 적인으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검사로 착각하시는데……

〇洪準杓委員 아니 限定的 列擧라고 생각하십니까 例示的 列擧라고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金重緯 서로 개념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좀 오는 것같으니까 동일한 인식천상에서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洪準杓委員 저는 이것을 限定的 列舉條項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3권분립 원칙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이런 사람들에만 국회의 동의를 요하고 그밖의 일반 공무원들은 여기 헌번 78조를 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공무원을 임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이 대통령한테 있고 이 임면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국회에 의해서 제한되는 조항은 이 네가지경우뿐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미국 헌법에는 이게 고위 공직자들 전체에 대해서 上院의 諮問과 同意를 요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검찰총장, 경찰청장보다 더 높은 국무워원들의 임면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 동의를 요하지 않고 국무위원들이 잘못할 때는 헌법상 해임건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오히려 검찰 총장이나 경찰청장, 안기부장 이 사람들이 잘못했 을 때는 헌법상 말고 정치적으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문제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사실 권력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으로 공세를 해서 임면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치고 그 다음에 이것을 人事聽聞會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대통령의 헌법상에도 없는 공무원 임면권 을 제한하자 하는 것은 저로서는 違憲이라고 생각 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개정 사항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 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重緯 그 정도로 하시지요. 이런 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 〇黃鶴洙委員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〇委員長 金重緯 하세요.

〇黃鶴洙委員 오늘 네분 진술인들이 나오셔 가지 고 다 좋은 말씀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오실 때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국회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로 보아서는 손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손님을 모셔놓고 손님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한 어휘선택 또 피의자 다루듯이 우리가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議 事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 위 원장이 상당한 주의가 촉구되게 의사를 진행해 주 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重緯 회의자 다루듯이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서로 개념의 일치를 못 이 문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〇洪準杓委員 제가 우리 교수님에게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나 하나 풀어 가면서 물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마 오해를 산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人事聽聞會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필요할지 모르나 저는 항상 이것이 헌법개정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개정의 문제로 다룹때다루자는 뜻이지 헌법은 그대로 두고 법률개정 문제로 정치적으로 다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人事聽聞會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상 문제로 다룰 때는 곤란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 씀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金重緯 千正培委員 말씀해주세요.

〇千正培委員 네분 교수님들께서 아주 귀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새로운 지각을 제공받았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그동안 일천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가장 처음 다른 사안은 말할 것도 없이 국회의장 선출입니다. 그 경험은 저한 테 상당히 아프다고 할까요 저는 어느날 저녁 집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누구누구를 국회의장으로 지명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소같으면 그냥 넘어 갈수 있는데 제가 그래도 국회의원으로서 우리에게 국회의장을 선출할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저게 지금 이렇게 한 분이 여당 총재인 대통령께서 지명하면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과정도…… 지금 국회의 장 개인은 훌륭하신 분이고 제가 조금도 다른 생 각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분이 어떤 분이고 또 그 분이 지금 국회의장으로서 앞으로 국회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토론과 국회의원 상호간에 의견의 교환절차를 거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을 뽑는다 말하자면 그것이 솔직히 지금 우리 정치 상황에서 저는 야당입니다마는 소수과인 야당으로서 최종적인 의결에 있어서는 그냥 지게 되겠지요.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과정에 서는 소수파, 다수파를 떠나서 토론과 또 이 안진 말고 다른 안전에 있어서는 조자나 여론수렴만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바로 그 국회의장의 선출에 있어서 無記名으로 그냥 투표하게 국회법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 점들이 고쳐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한번다수파, 소수파 문제를 떠나서 국회의 討論機能, 調査機能, 輿論收斂機能만은 어떤 식으로든지 대폭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부지런히 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또 이 국회가 전 문성을 높이면서도 의원개개인들이 국정전반에 관 해서 심견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우선 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토론, 조사, 여론수렴기능을 높이지 위해서는 지금 바로 人事聽聞會 문제가 나왔지 때 문에 그 이야기를 저는 먼저 해 보겠습니다.

우리 朴鍾治교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특히 國政調査하고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國政調 査가 현재는 정부여당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당의 의지라면 다수파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國政調査가 정부에 대한 견제장치 중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시작될수 있는, 또 최종적인 결과로서는 소수파이니까어쩔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어도이런 점에서 聽聞會나 國政調査計劃書의 확정이라는가 또 國會 議案審議 과정에서 중인을 부른다든가 하는 절차적인 권리만은 소수파들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어야만이 국회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人事聽聞會 문제는 지금 존경하는 洪準杓 同僚

委員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분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국회가 어떤 공무원 임 명에 있어서 任命同意權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 는 오늘 여기의 논의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아까 檢察總長 임명에 있어 서 동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기회에 논의가 될 것이고 오늘은 人事聽聞會만에 한정해 본다고 한다면 人事聽聞會는 우선 국회가 동의 승인 또는 전출하는 공직자에 대한 안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人事聽聞會가 필요하느냐 마느냐 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憲法에 위반된다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아까 제가 國 會議長을 선출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 에서 다루는 議案을 얼마만큼 심도있게 심사하느 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내부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을 헌법하고 결부시킬 문제가 선물 하면서 사람 박 글로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무원 예를 들어서 國務總理를 임명동의를 하는 그 안건을 국회가 심사할 때에 과연 그 국무총리로서 동의 요청이 된 분이 과거의 경력이나 자질이나 연극이나 여러 부분에서 적절한 분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일, 그것을 심사하는 일은 국회의 내부의 의안심사의 문제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로 그후보자가 되어 있는 분을 국회에서 모셔서 聽聞會를 열어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문제이고 그것은 헌법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朴鍾洽敎授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重緯 朴敎授님 답변해 주세요.

○陳述人 朴鍾洽 國政調査도 그렇고 人事聽聞會도 그렇고 國會하고 政府와의 관계의 문제인데 대개 정부와 국회와의 대칭구도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가령 英國 議會다 그러면 정부여당과 야당과의 대결구도이거든요. 美國은 국회와 대통령 정부와 의 대결구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같은 데 서는 共和黨 民主黨 필요한 때는 서로 뭉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니까 여야라는 구분이 별로 없 지요. 그런 데서는 국회가 똘똘 뭉칠 수 있으니까 聽聞會가 잘 발달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그 표현을 쓴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꼭 영국식 비슷해가지고 정부하고 여당은 한 부류이고 야당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러한 제도하에서는 政府與黨의國政調査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반드시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같은 데도 國政調査를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데도고 기능이 도리어 국회쪽에서 활성화 된 것이 아니고 다 행정재관소로 넘겨버렸거든요. 그래서 대결구도인데 제가 國政調查를 반대하고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데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人事聽聞會 관계는 千委員님께서 아주 적절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함가 洪準杓委員남하고 얘기한 그 문제, 어느 범위까지의 공무원을 상대로 할 것이냐 이것은 사 실 저도 美國 憲法 열심히 보고 왔습니다마는 미 국은 굉장히 포괄적인 위임을 한 유형이고 우리는 아까 洪委員남의 표현이 계한적이냐 예시적이냐 그것은 제가 법을 그렇게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 는 그런 조금 미묘한 헌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러면 나머지 헌법에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〇千正培委員 제 말씀은 청문회문제가 헌법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陳述人 朴鍾洽 그런데 大法院長이다 國務總理 다 監査院長이다 국회 관여하는 長들은 사실은 委 員會에 왜 안 들리고 本會議에 직접 상정하느냐 그것은 일종의 관행으로 되어 가지고 아마 制憲 때부터, 또 우리 사회 관행도 그런 것 같아요 人 事 그러면 토론도 안하고 비밀리에 해야 되고 그 런 것이 국회 쪽에서도 있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 니다.

〇千正培委員 慣行의 문제이지 違憲의 시비가 일 어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 ○陳述人 朴鍾洽 그런 측면이 강하지요.
- ○委員長 金重緯 李思哲委員님 말씀하세요.
- ○李思哲委員 人事聽聞會와 관련해서 柳教授님하고 李教授님 두 분이 찬성을 하시는 쪽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三權分立 취지에 반하느냐하는 학문적 이론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현실정치적 측면에서 人事聽聞會가 도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과거 李範俊敎授께서는 維政 會 소속으로 여당의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현실정 치에 대한 감각과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李敎授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法司委員으로서 國政監査를 해보니까 물론 千委員도 여기 계시지만 여당위원은 집권여당이니 까 그런 것이야 없겠지만 자꾸 왜 어느 國會議員 을 왜 기소했느냐 公訴取消해라 이런 식으로, 國 會議員이 長官이나 檢察總長한테 질의를 하는 것 인지 요구를 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 지 고 있는 것이 우리 국회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번에 5월말에 開院했는데 議長 하나 뿝느라고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自民聯 소속의 초선의원이 현재까지 國會議長을 정치적인 협상, 정치적인 보답 대가를 여당에서 야당에 주지 않고 議長團 선출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번에는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얘기를 해서 과연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가 또 새 국회상을 정립하자고 모여든 초선의원이 저런 식의 발상, 과거 정략주의적인 정당정치의 하수인으로서의 발언을 하는 것이 온당하나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가령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 國會의 首長 인 議長을 뽑는데 한 달이 걸렸는데 李範俊敎授께 서 말씀하시듯이 檢察廳 警察廳 安企部 國稅廳 軍 幹部 陸軍參謀總長 이런 사람들 뽑으려고 우리가 청문회 열고 국회 임명동의하면 몇 달이 걸리겠습 니까?

현실정치로 이 사람들 뽑으려고 하면 단상점거 해가지고 국회 자체를 못열게 하는 이런 현실정치 의 면은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있습니다. 아까 李委員께서는 여당도 야당 될 준비를 해야 되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대신 야당도 여당이 될 때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大統領이 檢察總長 國稅廳長 安企部長 軍의 陸軍參謀總長 하나 제대로 뽑지 못하고 몇 달씩 공전이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된다면 큰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委員長 金重緯 李思哲委員, 질의를 압축을 해주시지요.

〇季思哲委員 그래서 이런 현실정치의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특히 우리가 경험한 여 소야대 시절에 야당이 다수당인 경우에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도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나 또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重緯 나와 계신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답변을 안 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안하셔도 괜찮습 니다. 지적을 했어도 아무나 답변을 해주셔도 좋 고요.

〇陳述人 李範俊 李委員이 제 이름을 지적을 했으니까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9대 국회 때나 15대 국회 때나 비슷한 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기 이 글에 썼습니다. 그것으로 대치해 주시고 이왕 내가 마이크를 쥔 김에 아까 제가 발표 때 잊어버린 것 한 말씀만 더 하고 싶습니다.

: 우리 國會運營過程, 정기국회 운영과정에 굉장 히 문제가 있는데 常任委員會에서의 決算審議 그 다음에 국정감사 그 다음에 본회의 대정부질의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그리고 예결위원회에 서의 예산심의와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나머지 안건을 심사하는 이것이 풀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기간에도 국회위원들 의 정책질의, 국감에서도 정책질의,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도 정책질의, 예산심사할 때도 정책질의 예결위원회에서도 정책질의,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을 토론하는데서도 부문별 심의를 안 하고 정책질 의를 하고 이것이 정책질의를 몇번째 합니까? 여 첫번을 삼탕, 사탕, 오탕, 육탕까지 가니까 우리 국민들은 국회위원들이 앉아서 회기 내내 똑같은 소리를 하지 않느냐 이런 프로세스를 없애기 위해 서 제가 건의한 것이 國會常時 運營體制을 갖추어 야 되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是常設化해야 되고 常任委員會是常設化해야。되고、監査院의 獨立性 그리고 聽聞會의 義務化입니다.

○委員長 金重緯 고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뢰벤스타인이 풀리티칼 파워 앤드 거번먼트 프로세스(political power and government process)라는 책을 통해서 新大統領制를 얘기했던 것은 아마 드골체제를 전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골체제가 權威主義的인 정치해태를 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란서 정치가 비민주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까 진교수 말씀하

신 것처럼 제도가 어떠냐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 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李良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良熙委員 네 분 교수님은 평소에도 존경해온 분인데 좋은 말씀, 가르침 잘 받아서 앞으로 의정 활동에 많은 참고할까 합니다.

하나의 예를 좀 들어 볼까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를 하는데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아서 시끄러운 집안인지, 아니면 가난한 집에서 며느님이 밥을 많이 먹어서 싸움이나는 것인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일찍 혼자 되었는데 혼자된 아들의 사랑을 며느리가 독차지해서나는 것인지, 이 원인을 잘 살펴본 후에 집안의 불화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國會法改正問題가 왜 나왔느 나 制度改善特委가 왜 생겼느냐 하는 현실적이고 원초적인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 니다.

지난번 총선후에 검찰이나 경찰이 공정한 수사 권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 시켰을 뿐더러 院 構成이 늦어진 원인도 궁극적으로 보면 검찰과 경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미끼로 여러가지 옳지 못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원 구 성이 지체되었다고 하는 그 근본을 망각하고 주변 의 예와 이런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國會法改正의 실질적인 중심 과제가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다 보니까 檢察法, 警察法 改正問題가 나온 것이고 표현이야 완화시켰습니다마는 選擧關聯 公職者의 中立性確保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입니다. 그 이슈를 檢察法, 警察法만가지고 해결 할 수 없으니 國會法에서도 적당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한 것이 사실은 이 제도개선특위의 國會法改正問題가 대두된 가장 중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심과제를 놓고 그러면 憲法違反이다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분이 발표하셨습니다마는 선배 위원님이신 이범준 교수님께서 아주 제일 정곡을 찌르셔서 가장 중요 한 중심과제가 바로 이 대목이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용기와 함께 해안에 높이 평 가를 해올려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교수님께 이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大統領의 權限을 침해하는 憲法違背事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부의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이 교수님께서는, 저의 생각인데 이 대목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판단의 재료를 제공하는 차원의 문제지 그것이 헌법위반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이교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판단하에하셨지 싶은데 가부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통령 고유의 任命權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하에 자료를 제공하는 그러니 까 檢察總長이 국회차원에서 다소 이러이러한 무 슨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더라도 대통 령께서 좋아하시고 엄명을 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임명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권이 있고 선출권이 있는 부분에서 는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차원에서 聽聞會를 해서 이 분은 동의하는데 나는 반대라고 하는 의사를 확실히 하면 되는 것이고 동의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위반의 범위를 넘어 서지 않고 참고 의 자료를 공허하는 수준에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교수 님께서 그와 같은 판단하에 이와 같은 주장을 해 주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거기에 대한 이교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올 립니다. (1995년 중 1995년 - 1995년 1995년

○陳述人 李範俊 문제는 여기서 제가 듣기로는 警 檢의 中立性問題인데 그것은 야당이 여당될 때 생각해야 되고 여당이 야당될 때 생각을 하고 특위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 위원님이 말씀이 맞 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진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아주 어 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도 檢察總長이라 고 했을 때 大統領이 나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의 눈치 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제가 아까 말한 것은 3권분립원칙에 의해서 대 통령이 먼저 임명하면 국회가 기기서 동의권을 행 사할 때는 여기에 발란스 파워가 이루어질 것입니 다. 물론 이것은 찬성하지만 시키상조다 하는 분 들도 계셨어요. 그 이유를 캐릭터 어쌔서네이션 (character assassination)을 들더라고요. 그것은 뭐나 하면 우리 정치문화상 누구 한사람 딱 발언 대에 서면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 런 토론 문화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 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느냐 언젠가 시

작이 반이라고 해서 우리도 시작을 해서 시행착오 의 경과를 밟은 다음에 우리 민주화가 정착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委員長 金重緯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모든 政策은 文化의 산물입니다. 문화와 동떨어져서 존 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朴憲基委員 말씀 하시지요.

〇朴憲基委員《朴憲基委員입니다. 1988年 1988年

시간 관계로 네 분에 대한 치사 말씀을 생략하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 분 분호 구분도

고 오늘 진출하신 교수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중에서 는 현재 입법적으로 해결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國會의 常設化問題도 지난 번 개정에서 1월10 일까지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1년간의 國會運營計 劃書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때도 與野가, 政府에서도 그것을 권합니다. 定期國會는 豫算審議를 충실히 하도록끔 하고 立法도 豫算審議 法律에 관해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하지만 一般 法律은 臨時國會에 체출해서 심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緊急懸案質問制度도 도입되어 가지고 있고 또 4分自由發言制度도 현실적으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제가 94년도 國會法 改正 때에 좀 옆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정말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법을 한번 만들자 이렇게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일하는 국회로 그 모습을 과감하게 쇄신을 하자 또 과행과 공전이 없는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국회를 운영하자 또 國會議員 상호간은 물론 國會와 政府간의 충분한 의견개진을 위해서 국회내에 討論을 活性化하자 대강 이런 것을 기조로 해 가지고 國會議長의 諮問機關으로 國會制度改善委員會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올라온 상당한 많은 改善案을 우리 국회에서 약 70%이 상을 수용을 했습니다.

우리로서도 정말 이제 좀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상당히 모습도 바뀌 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우리 陳教授님 말 씀처럼 법은 만들어놓고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서 그런지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지금도 政治圈이 불 신을 받고 있고 그래서 본위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가 많다 이렇

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국민들이 보 는 국회의원하고 저도 뭐 원래 정치에 별로 소질 이 없는 사람이 어쩌다가 이 길로 왔습니다마는 들어와서 느끼는 것은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그래 도 열심히 하고 국가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국회에는 조반가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 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래 봅니다. 저 는 이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교수님들이 현재의 國會倫理實踐規範이나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될텐데 실효성없는 새로운 懲戒制 度라고 할까요 倫理制度를 만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근본적 인 원인이 바로 國會議員들의 모습 국회에서의 토 론하는 모습이라든지 會議場에서 일어난 모습들 때문에 불신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좀 뭔가 윤리실천규범 이나 윤리강령을 지킬 수 있도록끔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뭐겠느냐 이것은 국회의 징계제도 아니냐 그래서 효과적으로 지금처럼 倫理委員會를 열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적당하게 가벼 운 제재를 해 가지고 실효성을 거둘 방법은 없겠 는가 이 점에 관해서 柳勝男敎授님께서 말씀해 주 시고요 또 朴鍾冶敎授님께 물어 보겠는데요 어떻 습니까? 아까 國政監査 말씀을 했는데 당장 우리 가 지금 국정감사를 지방에서 하고 왔습니다마는 地方議會에서 地方自治한다고 하면서 국정감사가 웬말이냐 이렇게 풀래카드를 걸어놓고 이렇습니 **中,**更多是 克拉克 亞 经多种包备 医工作 医毛虫

사실 지난 번 14대 국회에서 여야간에 같이 地 方自治團體에 위임한 사무는 監査의 대상으로 하 지 말고 機關 위임사무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위 탁을 해서 감사를 하되 이제 통보를 받기로 하자 또 국회가 특별히 地方自治團體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면 국회의 특별한 결의를 하도록 하자 이래서 여야의 비슷한 법안이 동시에 왔어요.

그래서 運營委員會에서 그것을 절충해서 滿場一 致로 통과되었는데 法司委에 가서 어느 위원이 違 憲이다 헌법에 이 국정감사를 국회가 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는데 그 권한을 자치단체에 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래서 단 한 분의 반대 이외에는 전부 다 여야 같 이 만장일치로 그것도 통과되었습니다.

- 國會 本會議에 가서 또 그것이 違憲論이 제기되 어 가지고 그것이 지금은 폐기되었는데 자치단체 의 國監에 관해서 朴敎授님의 의견을 좀 말해 주 셨으면 하고요 또 정말 대선배님이신 李範俊敎授 님께서는 직접 경험이 계시니까 常任委員會의 兼 任制度問題 안 있습니까? 14대 때도 상당히 논의 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는 16개 로 되어 가지고 안 있습니까? 內務委員會 財經委 員會 建交委員會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감 다녀 보아도 그렇고 상임위원회를 할 때 30명이 다 발언을 하면 한 사람이 10분씩 한다고 하더라 도 300분 이렇게 됩니다. 등실상 기본 환환하였

그래서 내무위원회는요 국감이 보통 새벽 1시 2시 이래서 끝납니다. 매일요. 이것이 참 상임위원 회 숫자가 저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상임위원회 를 좀더 늘리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만 약에 이것을 겸임을 해 놓으면 배가 되는데 그러 면 지금 현재 常任委員會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議決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 다. 이래서 美國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데 실 제로 어떻게 이런 것을 소화하고 있는지 하는 것 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4 h 프랑 프랑트를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민은 무슨 투자

○委員長。金重緯》그러니까「한꺼번에」다○해결하려 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하나 보는데 다 좋은 안인 데 다 받아 들이고 싶은 안이지마는 우리가 先決 課題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부딪히는 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끼리 의원들 끼리 지혜를 좀 모아보자 그래서 만든 것이 이 特 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本本學]

: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O陳述人 柳勝男 먼저 현재 이 倫理委員會의 구 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 국의 윤리위원회의 경우는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합 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윤리위원회의 조사결론 이 어느 한쪽의 편중된 정치적인 판단에 근거했다 라면 그 위원회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 또 효과 성의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윤리위원회의 경우는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하고 있고 저는 윤리 위원회가 어느 방향으로 활동하는지 좀더 그러한 객관적이고 중립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여야 동 수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먼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하 이 기관의 기타 보니면 시작한 본다

- 두번째로 이쪽 분야에 관련된 이론들 핵심적인

이론은 예를 들어서 國會議員 개개인들의 職業倫理가 내면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회의장에서 회의질서 문란하게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현재 이것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제도가불비하기 때문에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논쟁은 1950년대 화이녀와 프레드릭의 유명한 논쟁입니다만 지금도 어느 것이 맞다 좋다 객관적으로 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制度의 未備 그것도 원인일 수도 있고 또 공작자 개개인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행정부의 관료가 되었는지 개개인의 倫理觀 여기 두 개에서 어느 것에 중요한 비중을 두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따라서 달라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근래 이쪽 부분에 다른 각도로 어프로치하고 있는 것은 국회 자체 내에서 현재 倫理規範이나 實踐要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자체내에서 통체는 한계점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 시민단체가 국회의 활동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또 언론이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것을 차꾸 문제 제기를 하므로 해서 이것이 의원 개개인의 윤리를 내면화 하는데 굉장히 크게 자극을 주고 역할을 할 것이다 이쪽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쪽 부분은 이론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규범이나 실천 요강에 따라서 행동하고 지키도록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단일처방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회내에서 앞서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현재 國會法 13章 14章 여기에 국회의사 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라든지 여러가지가 國會法에도 명문화되어 있고 두 개의 규범과 강령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을 국회 전체차원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따르고 지키고 하는 분위기 쇄신들 그러면서 倫理委員會 활동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O陳述人 朴鍾洽 朴憲基委員님께서 질문하신 地 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問題는 제가 그 당시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어서 많이 관여했습니다마 는 결론적으로 국회의 통제기능을 유지하는 문제 또 자치시대로 가야 한다는 문제 또 지금까지 지 방자치단체의 행정의 난백상에 대한 주민의 불신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섥혀 있는데 제 개인 생각은 아직도 어차괴 가는 길은 자치시대니까 지난번 14 대 때 추진한 그런 수준으로라도 15대에서 다시 추진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렇게 생각합니다.

O陳述人 李範俊 英國의 경우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이면서도 중앙집권적인 국가인데 거기서는 부처별로 地方政府를 統制를 계속하면서 越權行爲를 할 적에는 용납을 못하고 보조금까지 끊기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議會法에 의해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주어지기도 하고 박탈되기도 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美國 國會에서는 수가 많고 발언시간이 많은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서는 철저히 分科委員會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 같이 길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1분 발언으로 해가지고 쭉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전문위원도 청문회 때 중인 참고인한테 질문도 던질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분과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같습니다.

○柳宣浩委員 柳宣浩委員입니다. 고쟁들 많으십 니다. 저는 과거에 군사독재시절 때 국회가 가졌 던 민주화에 대한 과제와 문민정부 하에서 가져야 할 과제가 분명히 다르고 또 그 차원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런데 제가 얼마전에 얻은 경험입니다마는 굉장히 국회기능이 이루 말 할 수 없이 낙후되어 있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한마디로 질문할 시간도 부족하고 답변 들을 시간도 부족하고 또 일괄질의 방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의미하며 또 답변자 태도는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眞相調查를 하자고 할 때 거기에 응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국정감사가 질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진상조사 중심으로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응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회 기능을 제고시킵니까?

아까 陳教授님께서는 우선 있는 법이라도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너무 저는 개혁차원에서 미흡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고 토론하는데 기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진상조사를 위한 國政調査權 發動의 緩和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진교수님 發題가

기대보다 약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朴敎授님께는 여러가지 디테일한 代案들을 제시 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 때문에 저희 당이 실제로 개혁적 차원에서 複數常任委制 를 내놓고 또 발언시간도 개인당 의원이 많이 확 보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실 질적인 통제를 위해서 國監法에 국정조사 요건도 완화하자 이런 안도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내 놓은 안인데 실제로 박교수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것을 보면 豫決委 常設化문제, 複數常任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계세요.

일단 週 常任委制度를 채택하자느니 예결위는 1 년에 두 번 정도 해보자느니 이렇게 말씀하셔 가 지고 과연 이것이 현재 어떤 십사 기능이랄지 이 런 것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 제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本會議 中心主義로 저희들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讀會制度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의원들 모두가 법안심 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이 본회의 중 심주의로 못하는 물리적인 여건 때문에 고민을 하 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은 의견을 듣 고 싶고 그리고 國會議長의 黨籍保有 禁止問題에 대해서는 陳敎授님께서도 의장이 약화되어서 문제 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직접 적인 의견을 말씀 안하셨던 것 같아서 한번 그것 이 결국은 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의견 을 듣고 싶고 박교수님께도 議長의 黨籍保有에 관 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〇委員長 金重緯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〇陳述人 陳在勳 國政監査制度는 柳委員旨이 느 끼신 것이 적절한 일입니다. 저희 나라의 국정감 사 같이 정기적이고 일반적인 국정감사를 하고 있 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일본이 초기 에 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國 政監査는 명실상부하게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여 기에서 정책질의로 시간을 다 보내고 이러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국정감사의 본래의 뜻에서 크게 어긋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 개정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더 국정감사를 심 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는 기? 그리고 제가 보아서는 이범준교수님께서 이런 발씀을 하셨습니다. 對政府質問을 여섯번을 한다 고 하셨는데 제가 보아서는 여섯번이 넘습니다.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대정부질문 한번 하면 행 정부가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국가를 위 해서 하시는 일이고 다 같이 그런 입장인데 실제 백화점식 대정부질문이라든지 백화점식 국정감사 제도는 효율성이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特定事案 중심으로 진지하게 국정감사를 하셔 가지고 국민에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국 민이 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 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가 양당에서 의 러 말씀들을 자꾸 하시지요 하는 지말 하는데

獨逸에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證 人採擇에서의 定足數를 아주 낮추는 방법이 있습 니다마는 이것이 독일에서도 보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소수당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듣기 거북하 시겠습니다마는 의회라는 것의 원칙이 다수결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에 대한 예외를 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 문 문 문 문 문

그래서 懸案中心으로 하신다면 國政監査가 좀더 압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議長의 黨籍問題는 제가 보아서는 당적을 안 갖는 것이 원칙이겠고 그대신 議長의 權威를 尊重하는 이런 것이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지 의장이 당적을 안 갖고 지금처럼 의장에 대 한 모욕이 횡행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보았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의장이 黨籍을 이탈하는 대신 거기에 대한 國會代表로서의 어떤 윤리적인 대우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 가 이것이 가치론이 되어야 할 것이었어!!가 생각 1798年至北京 斯特拉克 林區 医氢氢苯 합니다.

고정답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宣傳 (中國)

〇委員長 金重緯 고맙습니다. 박교수님 말씀하시 지요. 이 한다는 학자 회사 등장 전 등의 한품로 위험장

〇陳述人 朴鍾洽 柳委員남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 만 豫決委하고 複數常任委 問題는 제가 그 당시 94년도 國會制度改善委員會를 학자들하고 언론인 들하고 할 때 제가 간사를 해서 소상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이것이 저는 당위론적으 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끝에 가 가지고는 의 것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特委委員님 들만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막상 타결이 어 렵더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각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결사반대를 하시더군요. 制度改善委 員會에서는 거의 당위론적으로 다 좋다고 하는데 도…… 그래서 그것이 안되어서 저는 현실적인 것 우선 단계적으로, 점증주의라고 그럴까, 그래서 그 랬다 뿐이지 제가 무슨 지대에 역행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해를 해주시고……

本會議中心主義로 복귀하는 案이 일부 있던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代 때 사실 民主黨 政權 인데 의외로 그때는 常任委員會中心主義로 대폭적인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것을 다시 본회의중심제라는 것은, 리딩이라고 讀會制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독회제로 다시 간다고 그러면 수십년 오던 것이 다시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인데 본회의중심제가 나쁘고 상임위원회중심제가 더좋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든 우리 제도는 항상 순수성이 없어요. 憲法도 그렇고 國會法도 그렇고 좋은 것은 다 따다가 놓았는데 언뜻 보면 미국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이 잘 안된다 하는 말씀이 있고 議長黨籍保有問題는 그것도 당위의 문제하고 현실의 문제인데 우리 정치문화가 가령 예를 들어서 여당하시던 분이 국회의장이 되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당적을 안가졌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군가리고 이용 아니겠습니까?

명년 전에 영국의 웨더링이라고 하는 하원의장이 왔습니다. 영국은 당적을 안가지는 동시에 의장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與野議員들하고 점심도 안먹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외로운 수도승 같은 생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일본식처럼…… 지금 도이가 총선때문에 다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일본도 했다 안했다 그랬거든요 역사상 쭉 해온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가령 야당의원님들이 지금 무소속이시니까 여당이 아니다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생각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委員長 金重緯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이상 적이다 이런 말도 언뜻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건가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金炯旿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金炯昨委員 2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술인 네 분 선생님들 한 네시간을 상당히 몸도 마음도 불 편하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상당히 진지한 토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5분을 하려고 하는데 5분이 조 금 넘을지 모르겠으나 되도록이면 압축을 하기 위 해서 많은 부분을 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는 陳在勳선생님과 柳勝男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해주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저는 이 國會運營의 基本을 "本會議中心이냐, 常任委中心이냐"라기 보다는 차라리 "懸案問題中 心의 國會"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의원간의 質 問과 討論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이런 국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 려 보겠습니다.

지금 國政監査問題에 대해서 李範俊교수님을 비롯해서 몇 분교수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수년 전부터 "國政監査 없애자"하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니면 언론한테 얻어맞으려고 큰일 날소리 한다고 옆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國政監査가 질의의 내용이 형식적이고 선서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이지 常任委 政策質疑와 本會議 對政府質問과무슨 차이가 있는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나 진술인으로 오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아주 형식화 되어가고의해적으로 되어 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行政府에 冤罪符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과론이 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國會에서는 산더미 같은 資料要求를 해가지고 그 20일간에 그리고 동시에 우리 陳在勳교수 말씀대로 전국 동시에 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行政麻痺의 현상이 있고 여러가지의 副作用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제는 國政監査制度를 언론이 두렵다, 여론이 두렵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진지 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한 서너가지의 대안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懸案이 있을 적에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또 그렇지 않다면 동시에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1회를 하되 그것은 委員會가 알아서 한다는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決算監査와 國政監査를 묶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人事聽聞會制度를 가지고 여기가 있었습니다마는 美國은 인사청문회를 하지만 미국은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없는 나라입 니다. 그래서 어떤 집중이라든지 자질능력을 평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겠다 하는 식은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人事聽聞會制度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本會議 對政府質問制度" 이것도 우 리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국 정전반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기 때문에 결국 누가 나오든 여야를 떠나서 이중심중의 반복질의 와 반복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역시 懸案이 있을 적에 國務委員을 부르 든지 해당 長官을 불러서 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常任委 역시 業務報告 中心으 로 하기 때문에 위원간에 얘기할 시간은 없고 항 상 행정부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됩니다.

常任委에도 懸案中心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가지 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네 분 교 수님 공히 지적한 대로 무슨 讀會制度라든지 逐條 審議라든지 일종의 法律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 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懸案中心으로 그리고 의원간의 對話와 討論을 통해서 어떤 국가의 문제 를 끌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다만 聽聞會制度는 류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집단에 의해서 좌우될 소지도 있지만 우리 사 회의 정치문화하고는 청문회가 안맛다고 하는 것 이 지난번 5共 聽聞會를 중심으로 이미 드러난 일 网络大大大大 医二氏性 이 있습니다.

그래서 議員間의 質問과 討論을 통해서 대화를 활성화하고 懸案中心으로 국회가 가야 하지 않느 나 하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하유 등을 하는 사이라는 요하는 것이다.

〇委員長 金重緯 네 분 중에 누가 답변하시겠어

〇陳述人 陳在勳 아까 李範俊교수도 말씀하신 문 제인데 業務現況報告制度가 사실은 우리 국회 속 기록을 보더라도 옛날에는 업무현황보고가 없었습 니다. 그런데 이것이 維新 때에 維新國會 때 국회 를 달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 업무현황보고입니 **中**學 作品的 医多种 医侧侧 化甲基氯甲酚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다루어 오는 것입 니다. 그래서 물론 잘 하시는 委員會도 있습니다 만 예를 들어서 제가 經科委員會에 있을 때 科學 技術處量 상대해 보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 에 있는 硏究所長들이 전부 올라 옵니다. 그러면 그마만치 하루가 마비가 되는데 제가 보아서는 앞 으로 설령 업무보고…… 국민에게 지탄을 받지 않 으려면 국회도 이런 면에서 좀더 슬기롭게 접근해 주셔야만 국민의 사랑도 받고 국회의 업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보아서 業 務現況報告 라고 하는 案件은 옛날에는 없던 안건 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重緯 柳勝男陳述人께서 말씀하세요. ○陳述人 柳勝男 결산을 국정감사 하고 연계시켜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데 그러한 연계체제로 운영이 될 경우에 사전에 국회내에서 준비함 사항들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현재의 예산결산 시스템 가지고는 되지 않는 부분 등..... 운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조직구조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아 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변할 수 있다면 무개를 연계시 켜 보는 것이 제일로 효율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 까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重緯 고맙습니다.

黃委員께서 간단히 해 주시지요.

○黃鶴洙委員 저는 국회 바깥에서 국회를 바라보 는 인식을 바꾸는 방법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 서 오랫동안 국회에 계셨던 朴鍾洽先輩님한테 친 정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실 베니까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실지 우리 국회에 들어 와서 회의가 열리고 있 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 그런데 바깥에서 볼 때는 本會議나 常任委가 열리면 국회가 일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회기가 없으면 국회는 놀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이 국회는 어떤 면에서 놀고 먹는 곳 또 가십 란에도 많이 납니다만 애나 보러 가라든가 국회를 비하하는 그런 기사와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또 다른 인식은 국회는 그저 날치기나 하든가 매 사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문제를 보고 지나간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히 많은데 실지로 회기 가 없는 때 보면 地域區 民願을 처리한다든가 대 소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욱 더 바쁩니 医克里特氏性皮肤 医皮肤 医血管管 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그것을 가져야 하느냐 本委員만 해도 이번에 出馬를 하면서 祖上 3代에 걸쳐서 비판도 받고 다 홀딱 벗겨 졌습니 다. 우리 나라 公職者로 보아서 4년마다 이렇게 냉혹하게 아주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은 選任職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 게 국회가 또 국회의원이 배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국회에 종사 를 하셨고 국회 바깥에서 국회를 보는 그런 입장

이시니까 존경하는 朴鍾治先輩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陳述人 朴鍾洽 전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희 政治文化는 경계가 없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 리 국회기능과 정당의 기능과의 경계를 어디에 다 가 그어라 그러면 그을 사람이 없고, 政府機能하 고 國會機能하고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되느냐 그것도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다만 제가 보건대는 아까 영국 의회제도 얘기하고 미국 얘기했습니다 만 우리는 불운한 헌정사를 겪어온 것이 결국 부 담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영국 이나 미국같은 데는 어느 정도 議會라는 기반을 쌓은 다음에 政黨政治가 들어 왔는데 저희는 해방 과 더불어 좋다는 것은 다 들어 왔거든요.

의회도 외래문화이고 정당도 외래문화이고 정부 자체도 외래문화이고 다 혼합되어 있어 가지고 거 기에다가 政府 政黨이 의회의 기능을 잠식하게 되 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마치 국회는 권투링만 제공하고 그러니까 싸움만 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비치고 사실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셔도 제가 보 기에 참 열심히 하시는 의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언론이나 이런 데는 마치일은 안 하고 싸움만 하는 그런 것으로 비치거든 요. 역시 議會的인 터가 조금 약해서 그런 것같아요. 역시 議會的인 터가 조금 약해서 그런 것같아요. 이것은 아마 제가 보건대는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같아요. 의회가 개혁을 하려면 정부모도와줘야 되고 정당도 도와줘야 되지요. 아까 議長黨籍問題 다 똑같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개 700년, 2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하고 비교하기에는 어려운데 세계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70%받는 의회는 없습니다.

미국의회, 영국의회도 여론조사해 보면 제일 밑바닥일 때는 30%, 위로 갈 때는 60몇% 그런다고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도 너무 실망을 할 필요는 없을 것같고요 우리 언론인들이 사실은 너무가집 위주로 쓰다 보니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다른 데는 의회의 활동을 보도하는 것이 굉장히 전문성을 띄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도 우리 위원 님 잘 아시지만 컹그레셔널 쿼터리도 있고 독일 가면 파리먼트라는 신문도 나와 가지고 의회에서 하는 것이 샅샅이 여야 의원들 얘기한 것까지 나 오는데 우리는 그것이 다 카바가 안 되니까 어느 의원이 뭐 했다 어디서 무슨 문제 했다 뭐 이런 것만 나오니까 국민들이 그러는데 세월이 좀 흐르 띤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〇委員長 金重緯 마지막으로 鄭委員께서 말씀하 세요.

○鄭均桓委員 제가 너무 늦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는 갈등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네분의 말 씀을 잘 들었고요 사전에 사실 조금은 보았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法案을 작성하기 이전에 보 았더라면 고민을 덜하고 했었을 것이라는 그런 아 쉬움을 느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人事聽聞會問題를 얘기를 많이 한 것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李思哲委員인가요? 지금 안계셔서 아쉬운데 계실 때 바로 그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 수준이 이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아직 빠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두가지인데 왜 國政監査하면서 어느 議員을 기소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따지고 묻는 것을 보고 한심했다 하는 얘기와 議長을 하나 뽑는데 한달 걸렸는데 청문회 도입해 가지고 國會運營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본질이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法司委員들이 검찰에 가 가지고 어느 議員을 기소했고 어느 議員을 불기소 했을 때 사건 자체를 놓고 잘 했는가 못 했는가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 서질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을 질의한 것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만한 것으로 이렇게 격하시켜 버리면 國政監查 할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국회의 위상문제도 되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의 자질 문제까지도 내 비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議長은 국회에서 동의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치적 싸움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李壽成總理같은 경우를 동의를 할 때는 여야가 점예하게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때 였 습니다만 두말없이 그것을 전부 찬성해 주었습니 다. 그것 하고 이것 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 본질 이 잘못되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물론 전부 위원 님이셨고 국회에 계셨고 국회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쁜 시간 내 주시고 와 주셔서 이해 는 하겠지만 그것이 人事聽聞會 하고는 전혀 관계 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해 나갈 때 상당히 부담스러움이 있었습니 다.

예를 들면 저희 內務委員會에서는 같은 內務委 員이고 또 다른 同僚議員이지만 직접 選管委 상대 로 질의했습니다.

왜 이 분들을 起訴 안했소? 기소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받아냈습니다.

그것은 법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지 사람을 기준 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政治的 利害關係에 의해서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 아무리 친정에 오셨지만 지금은 그런 國會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는 말씀과 함께 인사청문회 도입문제를 그것으로 인해 반박해서 안되지 않느냐 국회의원 수준이 이 정도인데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대단한 문 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는 사실 儀式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儀式을 외면해 버리면 남 대문시장의 돗떼기시장보다도 더 엄청난 갈등이 유발될 것이고 그 해결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러 나 儀式이 있기 때문에 그 儀式節次에 따라서 하 면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議長의 黨籍問題가 너무 형식적이지 내 부적으로까지 黨이 변하겠느냐 하는데 옷을 같아 입으면 마음도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 면서 물론 참고로 했기 때문에 다시 답변은 요하 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監査를 하고 있는데 李範俊 先輩議員께서 잘 아시고 국회 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연구하셨던 朴敎授님이나 陳敎授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진이 빠졌어요. 두 세시까지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했 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중요한 문제도…… 어느 의원님 말씀이 눈꺼풀이 자동셔터가 되어서 앉으 면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중요한 것 이고 덜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정감사는 制度的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경써야 할 것은 부분적 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 때문에 전체를 없애야 된 다는 논리를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부담스러운 논

리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단 국정감사제도는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 는 것이 지로서는 가장 懸案問題로 생각하고 있습 나다. 여자를 가장 이 남은 그는 그는 요리 등 화를

李範俊敎授님께서는 미국과 같이 分科委員會 형 태로 해봐라, 小委員會別로 나누어서 해보라는 말 씀을 하셨고 자교수님이나 陳교수님 柳교수님도 나름대로 다 방법이 있으면…… 이것이 상당히 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결론을 도출해 내야 되는데 썩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 언을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

〇委員長 金重緯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부터 지 금까지 근 4시간동안 자리 한번 뜨지 않으시고 물 한모금 안 잡수시고 공청회에 임해주신 여러 교수 님께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그 그 그 글 글 글

저도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지금 鄭均桓委員 말 씀처럼 국정감사제도도 입법기능도 豫決算審査機 能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나라 政治의 核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나 정당의 발전과정이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시 대에 맞는 제도로 탈바꿈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 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여러 敎授들께서 제기한 문제들이 저희들도 대단히 고민하고 있는 제도입 14 新联系统建筑系统 28 III

어떻게 하면 豫決算機能을 강화할 것인가…… 野黨이 常設化를 주장했는데 상설화했을 때 朴鍾 洽敎授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상임위와 예결위와 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또 복수위원 겸임제에 있어서도 議決定足數의 문제를 어떻게 하고 국정감사가 동시에 이루어졌 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전 제조건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고민들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이 앞으로 國會法을 개정하는데 크게 참고가 될 것이고 또 개정과정에서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또는 지혜를 빌리고 싶다고 했을 때는 아무 때나 전화드리거나 연락을 드려도 불편하시더라도 불편 하게 생각하지 말고 응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

○鄭均桓委員 나중에라도 우리 制度改善特委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医脑旁膜 人名西西西斯托西西西西西西西西西 The formation of the second of the second 化铁 医血蛋白蛋白 医自己性 医甲基氏性 医格雷氏坏疽 おいこか かるみいかがいるい 気 もったき 設計物

graph the consumer set to be a larger 动物 医闭鞘电池 看事的现在分词 医皮肤试验 医多种毒素 医皮肤 连 人名奎因 医肾髓膜炎 医克尔德氏囊 取一致的 医轮胎 医性韧带的病 人名 人名巴里斯 医静脉 法国民党

사람 가겠다. 여자화 등을 적호상함이 있다. 용칫症 大学 1945年中国第20年 **6**16年,一个年间代的一个学生企业 多数的 真是的 化水蜡酸油油 化二氯酚 医草 医血管 支配 表數 血物原名 虚形 计总页 电压频 医科茨基 艾克斯 如一新脚两条的一位形式全身 建二铁矿 克特特 字科 电三流流 医髂柱窦 医温尔 电电路 医乳体管 语语 B. 中野野 鲁士本 医多体科 医多体 医焦 中食品多 人名英加兰克萨 机旋转数 医顶膜 体体 拉大的 基金 传动台 安尼 巴曼 医静血管切断 基金属化工具的 医多头点 医海绵基膜 医红膜底壁 手速盘 使商品 软 使医上放坏化的基 核原体基体 超点 医邻二烯酚 网络马克斯 化化物 医氯磺 家的基本的 a Sept. 1986年 1

多 医植物医多 多点 化压压滤池 的复数 医多类 医二异子 建铁基 使压制某物 海區 中国工会协会 行业的 计控制表达 计多元的 经货币本金额 医原染 拉田尼克 光火 普勒斯女 经算分五 化存储 脸部的 全区 Extend 医异体配触 体胶 人生的 总员 落乱 [15][16][16][16][16][16][16][16]

建阿斯尼克斯 海南 化拉口过滤电解器 医血管脓肿的 如下 主体的 整 在各型中国语 落合的 海洋規 攻擊 医牙形的过去式和过去分词 医皮肤静脉 压榨 子。1 1941 1946 A. 日本音楽 基本 女 山麓特別的 医闭孔 医环状溶液 医甲状腺 化氯化苯基 1997年 - 1998年 그리본 시민 점심장이 되습니다. 한국 네 시민 전 시민 생각이 되었다. 医电子性性 医侧侧 医侧骨 化化合物管 医静脉炎 化热温光谱 化连棒 机旋点 医皮肤 萧 建胶料 医大流病 医肠膜 医克克特斯氏性坏疽 医克克特斯氏

西海州 [98] 医二甲基氯基 林中多日 阿拉 寶琴藍 建二氢杀乳 海豚品 医胎性 軟體 动态的复数形式 网络西瓜属 化四氢苯甲磺胺 医环期 医麻痹 医动物

计图像记忆的 英国国际 医金属 医肾髓 经股份

○委員長 金重緯 鄭均桓委員의 말을 내가 반복하 것이니까····· 그 이 의 가장하는 보존 건 ware Augelous 오늘 장시간 진술과 질의응답에 응해주신 여러 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혹시 방청석에 서면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없어요? 불문하는 프로플을 받는 환경을 보고 오랫동안 방청석에 계셨던 분들에게도 감사 이 사발씀 트립니다. 아이 불호은 논문성 잘 보다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散會를 선포합니다. 관광리 (F) 등 --# 설명 공급을 보고 교육 (18시07분 **산회**) - -

〇出席委員

金重緯 金炯 昨 | 朴憲基 孫鶴寺 |) 尹源重 李思哲 鄭亨根 洪準杓 辛基南,柳宿浩。鄭均桓。千正培。 李健介。李良熙年黄鹤珠、孙子子。 ○委員の日出席議員 を存む立場 1/1999 こか は構定 珠山江 エポトケチ エニキをもりず すちさ 事。門工委工員、「本本」「本本本」 (立) 法事案 : 議》官 (4) (4) (4) (4) (4) (4) [立一法》卷《議》作品,是是多《林···· 仁》生。 ○出席陳述人對於於一步心制 在語 (思述) (1) (1) [2] [2] 朴 鍾 洽 (성균관대초청교수) |李 範 俊 (성신여대정외과교수) | 물론 토를 등 陳 在 勳(청주대초청교수) 柳 勝 男 (국민대행정학과고수) 海拔 第一者以各集的 网络灰龙 统一的古代成员 人名 李皇的第三条件 医静脉 医静脉 计算机 化多克克 기 프로스 이렇게 기념적 공업자은

中国医院选择 耳样中腺 的称语义 医压缩学 克萨斯斯 斯勒勒 特别的第三人称形式 人名马 를 통해 변환하는 유명중 중앙인 및 PP 등리 중 护 五声 受受伤工 医乳酶蛋白 医丁 甘树 的现在分词

医免疫 保存 体系 探知 计商品系统 化二氯化物 超 原种类 基 医起头 人名 非特别的 安美 교리하는 나는 스러운 이 프로를 사용이 있어졌다. 진화 분한 품환 생성 소설된 보육을 하되었다. 算者 達物 计自转数 建物油 条队化 种物种类之人 整律 医乳色质的 医医外部的反应术 医脓毒素 放弃 Sept in

情况的现在分词 [4] · 网络 · 医二种 (2) · 財命 協動機 整体影 · 日本極端 54.5